캄보디아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0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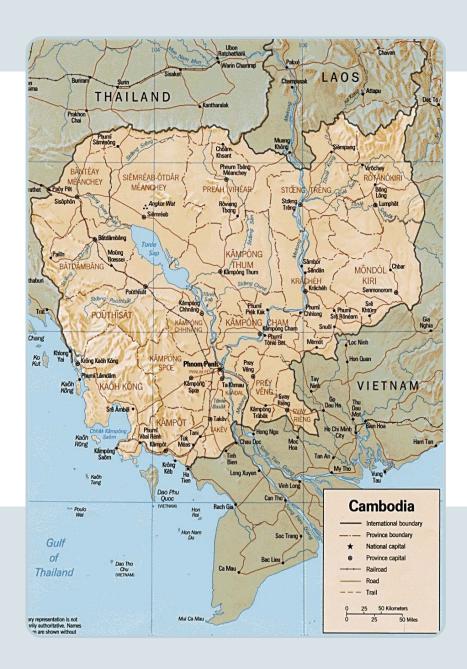


캄보디아 국기





캄보디아 지도



캄보디아 차 례 ◈ 최근 주요 이슈 ♠ 요 약 I.일반 개황 1. 국가 개요 3. 우리나라와의 관계 4. 사회와 문화 가.지연조건 나. 민족과 인구 다. 국민생활 ------ 11 Ⅱ. 경제·정치 현황 1.경제 동향 ------14 가. 국내경제 나. 국제경제 18 2.정치 · 사회 동향 20 3. 국제 신인도 22 4.기 타 25

캄보디아 차 긘 Ⅲ. 주요 산업 1. 관광산업 26 2. 정보통신(ICT)산업 가. 정보통신산업 개황 30 (1) 정보통신 관련 주요 기관 -----30 (2) 주요 정책 32 나.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현황 36 (1) 통신산업 ---- 36 (2) 소프트웨어 산업 44 (3) 하드웨어 산업 44 3.에너지 개발산업 46 4. 섬유산업 49 Ⅳ. 외국인투자 환경 1.외국인 투자정책 및 절차 가. 외국인투자정책 51 나. 투자 인센티브 정책 57 다. 외국인투자 절차 62 (1) 투자신청 절차 62

차 례

(2) 투자신청서 기재사항	63
4.외국인 투자 여건	66
가. 무역제도	66
나. 노동여건	68
다. 조세제도	69
(1)법인세	69
(2)관 세	70
(3)부가가치세	71
(4)거래세	73
(5) 원천징수세	74
(6) 특별세	74
(7) 근로소득세	75
라.기타 제도	77
(1)소비자보호제도	77
(2)지적재산권	77
(3) 외환관리	78
(4) 특별진흥지대	79
마. 외국인 직접투자 유관 기관	84

차 례

Ⅴ. 우리나라의 진출 확대 방안

1.진출 현황 및 애로점	91
가: 우리기업의 진출현황	91
나. 진출 장애요인	96
2. 진출 확대 방안	99
가. 진출 유망 분야	99
나. 진출 전략	101
〈부록 I〉 캄보디아 투자법	105
〈부록 Ⅱ〉투자법 개정(안)	113
〈부록 Ⅲ〉 캄보디아 외환법	115
〈부록 Ⅳ〉 캄보디아 제품 및 용역에 대한 품질관리법 ···	123

표 차 례

<표 1>한·캄보디아 교역 현황 ······	8
<표 2 > 주요 국내경제지표	14
(표 3 > 주요 국제 경제지표	19
<표 4> 캄보디아 관광객 방문 현황	30
<표 5>캄보디아의 유선통신 현황	37
<표 6>캄보디아의 통신사업자 현황	39
<표 7>성장 경쟁력 지수	61
<표 8> 관세 부과 품목과 세율	71
<표 9 > 연도별 대 캄보디아 수출입 실적	91
<표 10> 업종별 우리나라 대 캄보디아 직접투자 현황	92
<표 11> 주요 국가별 직접투자현황	92
<표 12> 대 칸보디아 금융지원 현황	93

그 림 차 례

<그림 1> 앙코르와트	27
<그림 2> 타프롬 시원	28
<그림 3> 국별 캄보디아 관광객 수	29
<그림 4> 인터넷 가입자 증가 추이 및 전망	40
<그림 5> 인터넷 요금 변동 추이	41
<그림 6> 캄보디아 인터넷 기간망 현황	42
<그림 7> 인터넷 중계(Internet Exchange)구성도	43
<그림 8> 캄보디아 해상유전 블록 A광구의 위치	47
<그림 9> ASEAN 회원국	54
<그림 10> 대 캄보디아 외국인 직접투자 애로요인	60
<그림 11> 캄보디아 특별진홍지대	80
<그림 12> 캄보디아 · 태국 접경지역 포이펫	83
<그림 13> 포이펫 무역규모	83
<그림 14> 포이펫 방문 외국인 및 한국인	84

참 고 차 례

<참고 1>크메르 루즈(Khmer Rouge)	6
<참고 2 > GS 칼텍스, 캄보디아 해상 블루 A유전에서 원유 발견	48
<참고 3>캄보디아에 투자해야 할 세 가지 이유	53
<참고 4 > 대 캄보디아 외국인 직접투자 애로요인 및 성장 경쟁력 지수	59
<참고 5> 단독투자 또는 합작투자 결정 시 유의할 점	65
<참고 6>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여건, 갈수록 호전	81
<참고 7>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 장려 및 제한분야	87
<참고 8>파트너 선정 시 유의사항	90
<참고 9 > 캄보디아 비즈니스 에티켓	94
<참고 10> 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환경에 대한 SWOT 분석	98

최근 주요 이슈

가. 2006년 상반기 대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 대폭 증가

- □ 2006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2배 이상 증가
- 2006년 상반기 중 대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가 대폭적으로 중 가한 것으로 나타남.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외국인 직 접투자는 11억 달러를 기록하여 상반기의 4억 4,900만 달러 와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함.
- 국내 자본 투자 분까지 합칠 경우 상반기 전체 투자액은 23억 달러에 달해 2005년 전체 투자액 11억 달러와 비교하여 역시 2배 이상 증가함.
- 특기할 만한 사항은 금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에는 한국기 업이 프놈펜 인근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투자액 9억 8,8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음. 참고로 프놈펜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총 21억 달러가 투입되며, 건설에 10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나. 캄보디아 투자유망국 주목

- □ 캄보디아는 2005년 7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된 메콩강 유역 경제 협력회의에 참석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토대로 한 메 콩강 경제벨트 구축에 합의하였음.
- □ 메콩강 유역 경제협력회의는 메콩강 경제유역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총 1,500km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2008년까지 완 공하고 2012년까지 역내 5개 고속도로를 개통하는 등 사회 간접자본 확충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음.
- □ 캄보디아는 외자유치를 통한 원유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캄보디아에서 원유가 발견된 곳은 서부 해상 130km 지점에 있는 블록 A광구이며,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 자본을 통한 유 전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 특히 캄보디아 정부는 에너지산업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개발 사업에 외국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세제혜택 등 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요 약

- □ 캄보디아 GDP는 62억 달러(2005년), 1인당 GDP는 383 달러(2005)
- 2003년 이후 농업생산의 부진과 함께 다자간 섬유협정 (MFA)의 종료로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품인 의류의 국제 경쟁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섬유제품 수입규제로 의류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2003년, 2004년 7%가 넘는 성장을 보였으며, 2005년에도 7.0%의성장을 기록함.
- □ 산업구조: 전통적인 농업국이나, 최근 관광산업, 에너지 산업 호조
- 2004년 이후 관광산업 호조
 - 2003년 SARS의 영향으로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으나, 2004년 들어 정국이 안정되면서 캄보디아의 전체 관광객 수는 2004년 51%, 2005년 35%의 큰 폭의 중가세를 나타냄.
-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하자원 보유
 - 캄보디아에는 석유, 금 등 중요한 지하자원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음.
 - 석유 및 가스분야에서는 Elf, Exxon, JNOC, Chevron 사 등 메이저 기업들이 적극적인 탐사에 나서고 있는 가운 데 양질의 석유와 가스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됨.

- 국가정보통신기술 개발청(NiDA)을 통해 IT 분야 개발
 - 동 국 정부는 NiDA를 통해, 인프라 개발 정책환경 조성, 기업개발, IT컨텐츠 및 응용 부문 개발 등에 투자하고 있음.

□ 외국인 직접투자 : 최근 증가 추세이나, 여러 장애 요소 상존

- 동 국 정부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를 통해 투자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동 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료의 부패와 인프라 부족은 여전히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진출 전략: 인프라 사업과 관광사업 선도적으로 참여

- 인프라 구축 및 건설 참여
 - 수십 년간 내전과 정치적 분쟁으로 각종 기반시설이 파괴된 캄보디아에서 기초 인프라 구축 분야는 매우 전도유망한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원개발 사업 참여 확대
 - 개발 유망지역에 대해서는 독자 탐사를 통해 기득권을 선점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고려하면서 지분 매입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광산업 진출 확대
 -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앙코르 와트는 연간 수십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이므로, 숙박이나 위락시설 등의 투자수요가 많음





1. 국가 개요

위 치 :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 면 적: 181천㎢(한반도의 4/5) 일 フ 후 : 열대성 인 구 : 14 백만 명(2005) 수 도:Phnom Penh(120만명) 반 민 족 : 크메르인(90%), 중국인(5%) 언 어:크메르어(공용어), 불어 교 : 불교 종 독 립 일:1953.11.19(프랑스) 정 정 부 형 태:입헌군주제 국 가 원 수: Norodom Sihamoni 주석 회 : 양원제(하원 123석, 상원 61석) 치 주 요 정 당: 캄보디아 인민당(CPP), FUNCINPEC 국제기구가입: UN, IMF, ADB, IBRD, WTO, ASEAN 등 G D P:62억 달러(2005) 1인당 GDP: 383달러(2005) 화 폐 단 위:Riel 회 계 연 도 : 1, 1~12 31 경 산 업 구 조 : (2005) 농업 34.2%, 공업 26.7%, 서비스업 39.1% 주요수출품: (2005) 의류 77.4%, 천연고무 1.3% 제 주 요수 입 품 : (2005) 석유제품 3,4%, 건설자제 2,7% 주요부존자원: 고무, 원목, 인광석 경제적 강점: 고무, 임산자원 풍부

경제적 약점: 정정불안, 인프라 미비

2. 약 사

-1	864년	프랑스	보호령어	편입
----	------	-----	------	----

- 1941년 프랑스 보호하에 시아누크 왕정 수립
- 1945년 일본 후원하에 시아누크 왕정 독립 선언
- 1945년 일본 패전 후 프랑스 지배권 회복
- 1953년 시아누크 왕정 프랑스로부터 독립
- 1955년 시아누크, 선거를 통해 총리로 취임하고, 왕위는 아버지 에게 양위
- 1960년 시아누크, 부친 사후 국가수반직 복귀
- 1965년 월맹에게 캄보디아 동부지역 보급로 설치 허용, 미국은 월남전을 캄보디아까지 확대
- 1970년 론놀 장군, 쿠데타 성공, 크메르공화국 수립
- 1975년 미국, 캄보디아 철수
- 1975년 크메르루즈, 프놈펜 입성, 급진혁명 추진
- 1976년 민주 캄푸치아(Democratic Kampuchea) 선포
- 1978년 베트남 캄보디아침공
- 1979년 베트남군 무력으로 캄보디아 점령, 크메르루즈내 친베트남 세력인 행삼린, 훈센을 세워 괴뢰정권(캄보디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수립
- 1982년 시아누크, 손산, 크메르루즈 반베트남 연합전선 구축
- 1989년 소련 및 동구권 몰락과 캄보디아 운영의 경제적 부담에 따라 베트남군 철수
- 1989년 캄보디아 공산당은 국명을 State of Cambodia로 개칭, 탈 공산주의 추진
- 1990년 UN안보리, 포괄적 캄보디아 평화안 채택

- 1991년 파리 평화협정 서명(Agreement on a Comprehensive Political Settlement of Cambodia Conflict), 시아누크 왕 지도하에 UNTAC(UN Transitional Authority of Cambodia)와 SNC에 18개월간 통치권 위임, 신정부 구성 추진
- 1992년 45개국 22,000명으로 구성된 유엔사상 최대 규모의 평화 유지군 파병, 정전협정 준수 여부 감시
- 1993년 UNTAC 주관하에 총선거 실시
- 1993년 헌법 공포, 시아누크 왕 즉위, 라나리드와 훈센을 Co-Prime Minister로 임명, UNTAC 요원 철수
- 1997년 훈센 제2총리와 라나리드 제1총리간 무력 충돌 사태 발생
- 1998년 제2차 총선 실시
- 1999년 ASEAN 가입
- 2003년 제3차 총선 실시, 인민당(CPP) 73석, 훈신펙당 (Funcinpec) 26석, 삼렝시당(Sam Rainsy) 24석 차지
- 2004년 훈센 총리와 라나리드(훈신펙당 총재)간 여야 영수회동을 통하여 제3기 연립정부 구성, 훈센(현 총리)을 정부수반으로 하는 CPP와 훈신펙당간 연립정부 출범

<참고 1>

크메르 루즈(Khmer Rouge)

□ 1975년 정권 장악 이후, 급진 공산주의 적용

- 1967년에 결성된 크메르 루즈는 시아누크가 1970년 론놀의 우익(右翼) 군사쿠데타로 전복되자 농촌지역에 대한 대대적 인 세력확장을 통해 마침내 1975년 4월 수도 프놈펜을 장악 함으로써 정권 탈환에 성공하였음.
- 정권장악 이후 크메르 루즈는 급진 공산주의를 적용한 사회 개조 작업을 시작하였음. 먼저 크메르 루즈는 민주 캄보디아 를 표방하고 모택동식 협동농장 형태로의 전환을 위해서 캄 보디아를 국외와 완전히 차단하고 화폐제도를 폐지하였음.

□ 대대적인 숙청 작업 착수

- 크메르 루즈는 도시 사람들을 모두 농촌으로 내몰아 협동농장에서 극심한 노동을 시켰으며 이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처형하였음. 크메르 루즈는 론놀 정권하의 관리들과 동조자, 학자, 학생, 교사, 외국어를 아는 사람 등 즉결 처형하여 캄보디아는 공포의 도가니로 변하였음.
- 당시 약 700만 명의 인구 중 백만 이상이 처형되었으며, 특히 거의 모든 사원이 파괴되고 8만여 명의 승려들이 처형되었으며 약 500여명의 승려만이 살아남았다고 함. 이러한 비인간적인 야만과 살상 행위는 한때 "킬링필드"라는 영화로제작되어 세계에 알려지기도 하였음.

□ 1979년 크메르 루즈 정권 붕괴

- 1979년 베트남 군대와 이를 지지하는 캄보디아 공산동맹군의 공격으로 크메르 루즈는 전복되었고, 이후 캄보디아에는 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행삼린 정부가 들어섰음. 크메르 루즈는 이후 태국 근처에서 게릴라전을 전개했으며, 이로 인해 캄보디아 내전이 지속되었음.

□ 1999년 크메르 루즈와 캄보디아 정부의 내전 종식

- 그 후 199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어 오던 내전은 당시 크메르루즈의 지도자였던 폴포트의 죽음으로 1999년 종결되었음. 2003년 6월 6일, UN과 캄보디아 정부는 1970년대의 크메르루즈의 폭정을 심판하는 법정서약에 서명하였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7년 10월 30일(북한과는 1964. 2. 28 수교)

□ 주요협정 : 무역 및 지불협정('64), 투자보장협정,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상 '97) 등

□ 교역현황

〈丑 1〉

한 · 캄보디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3	2004	2005	2006.1~9	주요 품목
수	출	106	126	144	140	수송기계, 직물, 일반기계
수	입	4	7	6	4	농림수산물, 섬유류

□ 해외직접 투자현황(2006년 6월말 현재, 총투자 기준)

: 122건 161백만 달러

4. 사회와 문화 1)

가. 자연조건

□ 위치 및 지형

- 캄보디아의 면적은 약 18만km²로서, 그 크기가 한반도의 80%, 남한의 2배 수준임.
- 북쪽으로는 태국과 라오스의 국경과 접해 있고, 동쪽과 남쪽으로

¹⁾ 주한국 캄보디아 관광청 홈페이지에서 주로 인용

베트남의 국경과 접해 있으며, 남서쪽으로는 씨암만(태국 해안)과 접해 있음.

□기후

- 캄보디아는 열대성 기후로 2종류의 몬순으로 구분됨. 건기인 1월
 ~3월 중에는 약간의 비를 동반하고 시원한 북동 몬순의 영향을 받고, 비가 오지 않는 날씨가 계속되어 도로포장 등의 공사가 대부분이 기간 중에 진행
- 우기인 4월~10월 기간에는 고온다습하고 비가 많이 오며, 남서 몬 순의 영향으로 거의 매일 짧은 시간 비가 음.
- 가장 더운 달은 4월(최고 기온 43°C), 가장 추운 달은 1월(최저 기온 15°C)이며, 일교차는 대개 8~11°C 수준임.
- 강우량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심하게 나는 편이고, 연간 강우량의 80%는 우기인 4월부터 10월에 집중됨.

나. 민족과 인구

□민 족

- 구성: 크메르인 (90%), 기타 (10%)
 기타 민족의 구성은 베트남인(40만~100만명), 중국인(25만명), 잠족과 말레이 회교도(15만명), 소수 민족(9만명) 수준
- 크메르인은 태국이나 베트남 인이 거주하기 훨씬 오래전인 기원 직후부터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중국계는 소수 민족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임. 중국계는 공산화 이전인 1975년까지 경제활

동을 장악했으나, 재산몰수 추방 등의 문제로 그 수가 감소하다 최근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으며. 프놈펜 등의 상업을 주도하고 있음.

- 캄보디아인과 베트남인 사이에는 오랜 기간 중오와 불신의 역사가 존 재하고 있으며, 베트남계는 주로 정비업, 이발업 등 3D 업종에 종사
- 경제부문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말레이 회교계는 최근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인 구

- 전체 인구는 약 1,400만명(2005년)으로 추산되고, 인구밀도는 1평 방킬로미터당 72명, 경제활동인구는 약 600만명으로 추산됨.
- 연령별 인구는 0~14세(40.7%), 15세~64세(56.6%), 65세 이상 (2.7%)으로 분포하고 있고, 70년대 분쟁의 영향으로 남자들의 사망율이 높아 남녀 성별 비율은 48:52정도로 여성이 조금 높은 편이며, 평균수명은 약 53세임.
-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1960년~1992년 기간 1.7%에서 1992년~2000년 기간 2.7%로 증가하였고, 100명당 유아 사망률은 1960년 146명에서 1999년 110명으로 감소하였음.
- 총인구의 10%가 수도인 프놈펜에 거주하고 있고, 2000년 현재 프 놈펜 거주인구는 대략 120만명으로 추산됨.
- 주요도시 인구별로는 프놈펜 약 120만명, 밧땀방 12만~15만명, 시 암립 약 10만명, 껌뽕짬 약 4만명 가량의 인구가 분포되어 있으며, 나머지 지역에 소수의 인구가 폭넓게 거주하고 있음.

다. 국민생활

□ 언 어

- 크메르인들과 중국계, 베트남 민족 대부분은 크메르어를 사용하고 있 으며, 프놈펜이나 시암립 등의 관광지역에서는 영어의 구사율이 상대 적으로 높은 편으로 도심지의 곳곳에는 영어학원들이 성업 중임.
- 장년층의 경우엔 프랑스 식민지의 영향으로 프랑스어 구사가능 인 구가 많은 편이지만, 현재 젊은이들은 프랑스어 보다는 영어나 일본 어 기타 태국어 등의 공부에 열중하는 편임.

□종교

- 국교인 불교는 앙코르 왕조 당시 보급되었고, 여러차례 우여곡절 끝 에 현재의 소승불교로 발전. 크메르루즈 점령 직전인 1975년까지 국교였지만 크메르 루즈군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전국 3.000 여개의 사원을 파괴하고 약 8만 명의 승려를 살해하는 등 종교를 탄 압하였음. 1980년대 말 불교를 다시 국교로 지정
- 힌두교는 불교가 도입되기 전인 1세기부터 14세기까지 캄보디아 최대의 종교였으나, 현재는 이슬람교와 함께 소수 종교로 전락
- 이슬람교는 소수 민족인 짬족이 믿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프놈펜 하류의 강변에 기거하고 있음. 최근 들어 시내 곳곳에 사원과 건축 물 등을 신축하여 부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프랑스 통치의 영향으로 일부 지식층은 기독교를 믿고 있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최근 들어 각종 봉사단체의 선교로 인해 급 속히 확산되는 모습을 보임.

교교육

- 전통적으로 불교사찰이 지역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10세 이상 인구 중 50% 만이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라오스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음.
- 현재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시설 제공은 전쟁이전의 수준까지 회복되었으나 교육의 질은 빈약한 실정임.
- 교육체제는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3년, 고등교육 3년, 대학교육 4년으로 구성. 종합대학은 20개 학과를 가지고 있는 왕립 프놈펜대학이 유일하고, 그 외 2년제의 기술학교와 3년제의 단과대학이 다수 있음. 또한, 교육개방이 이루어져 외국계 대학분소 등 교육기관이 단과대 위주로 6~7개 있음.

□ 방 송

- 캄보디아 내에서는 4개의 방송채널 (TVK 국영방송, TV3, TV5: 태국계, Bayon: CPP 중앙당)이 있으며, 유선방송을 통하여 아리랑 TV, CNN, NHK, 프랑스 TV5, 베트남 TV7 등 시청 가능
- 요즘 들어 TV스타가 대중화되고 있으며, 상업광고 또한 활발한 편으로 드라마 부분의 경우 태국과 중국 드라마가 인기

□ 신문과 잡지

- 국내신문에 대한 통제는 최근 거의 없어진 상태이며, 외국신문과 잡지의 구독도 가능하고, 구입은 주로 가판대나서점 등을 이용
- 주요 신문으로는 캄보디아 최초의 영자신문 격주간지인 Phnom Penh Post, 불어로 발간되는 월간지인 Le Mekong, 통신사로부터 뉴스를 제공 받아 게재하는 Cambodia Daily, 말레이시아인이 후원 하는 영자신문인 The Cambodia Times 등을 들 수 있고, 그 외에도 4종류의 캄보디아 신문과 화상일보 등 3종류의 중국어 신문이 발행 중.

Ⅱ 경제·정치 현황

1. 경제동향

가. 국내경제

<표 2>

주요 국내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2	2003	2004	2005	2006 ^r
G D P	U \$ 억	43	46	53	62	66
1인당 GDP	U\$	308	322	354	383	_
경 제 성 장 률	%	5.2	7.1	7.7	7.0 ^{♠)}	5.8
물가상승률	%	3.2	1.2	3.8	5.8	5.0
재정수지/GDP	%	-3.6	-5.7	-4.4	-4.3	-3.1
대미달러환율	Cr	3912.0	3973.3	4016.2	4092.5	41 19.0

주: 캄보디아 정부는 2005년 농업 생산의 16.6% 성장에 힘입어, 2005년도 경제성장률을 13.4% 로 발표한 바 있음. 위의 자료는 ADB와 Would Bank의 Data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

자료: IMF, ADB, Would Bank

□ 2003~05년 안정적 경제성장 기록

- GDP 중 농업부문이 약 33%에 달하는 전통적인 농업 국가로 농산 물 작황이 경제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큼.
- 2003년 이후 농업생산의 부진과 함께 다자간섬유협정(MFA)의 종료로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품인 의류의 국제 경쟁이 심화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섬유제품 수입 규제로 의류의 대미수출이 크게 중가하면서 GDP가 7%를 넘는 예상외의 성장을 보였으며 2005년에도 7%의 성장을 유지하였지만, 2006년에는 5.8%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석유 가격 상승, 농업 생산의 부진 및 조류독감 확산에 따른 식료품 가격 상승, 정부 재정 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05년 중에는 쌀 가격이 15% 이상 인상되고 고기류 및 야채류도 20% 가까이 인상되었으며 이는 물가 불안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만성적인 재정적자 지속

- 오랜 전쟁과 제조업의 미발달로 세원이 크게 부족하고 세수행정의 비효율도 커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적자의 대부 분은 해외무상원조 및 양허성 차관에 의존하고 있음.
- 2006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정부 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19% 증가 한 9억 2,600만 달러로 정하였으며 국방과 교육 부문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 취약한 제조업 기반

- 오랜 전쟁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경제적 빈곤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던 캄보디아는 1997년 훈센 총리가 집권한 이후 정치적 안정과 함

께 강력한 경제개혁 정책 추진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음.

- 그러나 GDP 대비 농업 비중이 33%에 이르고 제조업 비중은 22%에 불과한 상황으로 제조업의 대부분도 미국과 EU 시장으로 수출하는 의류 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경제성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큼.

□ 지정학적 중요성과 함께 개방 경제 추구

- 1999년 ASEAN, 2004년 WTO에 가입한 캄보디아는 지리적으로 ASEAN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적극적인 경제 개방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제개발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음.
 - 미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가 2003년 기준 170개국 중 35위에 기록될 정도로 폭 넓은 시장개방 정책 추진

□ 관광사업을 통한 경제 발전 도모

- 앙코르 와트라는 세계적 문화유산을 보유한 캄보디아는 주요 외화수입원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산업 5개년 발전 계획을수립하고 2005년 중약 140만 명에 이른 관광객 수를 2010년까지 310만 명으로 중대시키는 목표를 설정함.
 - 이를 통해 현재 7억 7,700만 달러에 이르는 관광수입을 2010년 에는 23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임.

□ 열악한 인프라와 심각한 부패가 성장의 제약 요인

- 도로, 전기, 용수 등 투자 인프라가 크게 낙후되어 있어 대부분의 진출기업들이 자가 발전기와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투자환경이 열 악하며, 세관, 세무, 행정 관련 부정부패 등 후진국형 비효율이 심각 하여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부정부패 지수에서 캄보디아 가 총 117개국중 115위로 최하위를 기록함.

□ 경제 개혁정책의 지속 추진

- 훈센 정부는 경제개혁의 지속 추진을 위해 ① 경제 성장 중대, ② 고용 창출, ③ 평등과 사회정의 실현, ④ 정부 효율성 중대 등의 사각 정책(Rectangular Strategy)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세계은행과 IMF 등의 주요 국제기구는 이러한 캄보디아의 경제개 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세계은행은 캄보디아의 사각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5월 신 지원전략을 발표하였으며, IMF는 캄보디아의 대 IMF 채무를 탕감과 함께 빈곤감소 및 성장촉진 차관 (PRGF)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 WTO 가입 완료

- 2003년 7월, 멕시코의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WTO 가입이 숭인되었으나, 캄보디아는 2003년 7월 실시된 총선 이후 약 1년 동안이나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여 의회를 구성 하지 못함에 따라 WTO 가입에 따른 비준안을 상정하지 못하였음.
- 그러나 2004년 7월 훈신팩당의 Norodom Ranariddh가 국회의장, Hun Sen이 총리직을 맡는 연립정부가 정식 출범되고 이후 구성된 의회가 이를 통과시킴에 따라 가입이 완료됨. WTO가입에 따라

캄보디아는 주력 수출품목인 섬유, 의류, 고무, 목재 등의 수출이 호 조를 보이고 있음.

나. 국제경제

□ 상품수지 적자는 확대되나 통제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수출은 섬유류 및 1차 산품의 수출증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도 내수 관련 소비재 및 자본재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대미 의류 수출은 2003년 이후 20%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동국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음. 특히 2005년에는 미국의 대중국 섬유류 수입 규제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대미 수출이 25% 이상 증가하였으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 점진적 증가세

-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인 수출의 중가와 주요 국제기구의 순조로운 원조자금 유입에 힘입어 점진적인 중가세를 보이고 있음. 2005년 말 기준 동국의 외환보유고는 9억 5,500만 달러로 월평균 수입의 3.2개월 수준임.

< 丑 3>

주요 국제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1
경 상 수 지	-109	-236	-185	-356	-400
경상수지 / G D P	-2.5	-5.1	-3.5	-5.7	-6.3
상 품 수 지	-591	-581	-681	-1,018	-1,200
수 출	1,770	2,087	2,589	2,910	3,300
수 입	2,361	2,668	3,270	3,928	4.500
외 환 보 유 액	776	816	943	955	1,034
총 외 채 잔 액	2,900	3,139	3,377	_	_
총외채 잔액 /G NI	70.9	72.1	72.5	-	-
D . S . R	0.9	1.0	0.9	0.9	0.9

자료 : EIU, country report, 각호

□ 낮은 단기외채 비율

- 외채의 대부분이 중장기 공적채무로 구성되어 있고 D.S.R도 1% 내외에 불과해 단기적인 외화위기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 금융산업

- 캄보디아 국내 총 여신 규모는 GDP의 20%에 머물고 있으며, 금융 기관이 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상위 5개 은행이 총예금의 3/4, 총여신의 2/3을 차지하는 등 은행산업이 소수은행에 편중되어 있음. 예금시장에서는 상위 3개 은행이 국내은행의 앞지르고 있음.
- 또한 캄보디아 금융산업은 달러화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은행 자산 및 부채의 95%가 미 달러로 이루어져 있음.

2. 정치·사회 동향

□ 총선 이후 정치적 불안 지속

- 2003년 7월에 치루어진 총선거에서는 훈센 현 총리가 이끄는 CPP 당이 하원 123석 중 73석을 차지하였고 노로돔 시아누크 국왕의 아들인 노로돔 나라리드가 이끄는 FUNCINPEC 당이 26석, Sam Rainsy 당이 24석을 각각 차지하였음.
- CPP는 총선압승에도 불구하고 신정부 구성에 필요한 2/3 이상의 의석확보에 실패하여 연정 구성이 불가피하나, FUNCINPEC과 Sam Rainsy가 선거 부정을 이유로 훈센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며 연립정부 구성에 참가하지 않았음.

□ 신 연립정부 구성

- 총선 이후 7개월여 동안 혼란에 빠져있던 연립정부 구성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여 훈센 총리는 2004년 2월 제2야당인 FUNCINPEC당과의 연립정부 구성계획을 발표하였음.
- 2004년 7월 15일 전체 제적의원 123명중 9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원구성 및 내각인준에 관한 동시표결 (Package Vote)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됨으로써 훈신팩당의 Norodom Ranariddh가 국회의 장, Hun Sen이 총리직을 맡는 연립정부가 제2기 연립정부 (1998-2003년)에 이어 정식 출범하게 됨.
- 동시표결 최종 승인권을 갖는 시아누크 국왕이 오래전부터 북한의 평양에 머무르고 있어 상원의장 대행권한을 갖는 상원 제1부의장이 서명함에 따라 연립정부가 출범하게 됨.

□ 시아모니 왕자, 왕권계승

- 2004년 10월, 시아누크 국왕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왕권 양위를 전 격 발표하였으며, 시아모니(Sihamoni) 왕자를 왕권계승자로 지명 함. 시아모니는 장기간 국외생활로 현 정치권과 이해관계 및 지지기 반이 없기 때문에 왕권 계승의 적임자로 여겨졌음.
- 시아모니는 국왕 수락연설을 통해 입법, 사법, 행정 부문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정치권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천명하여 훈센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크메르 루즈 전범 재판은 최근 들어 진전을 보임.

- 2003년 6월에 UN과 캄보디아 정부는 크메르 루즈에 대한 사법처 리를 위해 전범재판소 설립에 합의하였으나. 7월의 총선이후 캄보 디아 정국 혼란으로 인해 협약에 대한 의회비준이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었음.
- 그러나 연립 정부의 지지 하에 2005년 11월 UN이 전범 재판을 위한 판사 후보 리스트를 정하고 캄보디아 군부는 군부대내에 재판 소 설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전범 재판이 진전을 보이고 있음.

□ 노동계 시위 등 사회불안 상존

- 반공산주의 그룹인 캄보디아 자유전선(CFF)의 활동과 의류업계 노동자들의 시위 등 소요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전범 재판 결과에 의한 소요 가능성

- 상당수 지역에 포진해 있는 크메르 루즈의 잔존 세력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범 재판의 결과에 따라 무력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음.

□ 주변국가와의 분쟁 가능성은 낮음.

- 중국과는 2000년 이후 양국간 협력강화와 함께 중국의 경제원조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임. 2001년 6월 태국과 양국간 분쟁요인이 되고 있는 태국灣 관련 양해각서 및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후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 2003년 11월 태국과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4개국은 경제전략협력(ESC)을 조인하여, 무역 및 투자 활성화, 경제협력 중진, 통신망 연결등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 역내항공 자유화, 공동 관광촉진 프로젝트 등이 실행될 예정임.
- 훈센 정부는 인접국인 베트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1979년 베트남과의 전쟁 이후 분쟁을 겪어 왔던 양국간 국경 문제에 대해 2005년 10월 국경확정 조약을 양국이 서명하고 동년 11월 양국 국회에서 비준을 받음으로써 오랜 분쟁이 종식되었음.

3. 국제 신인도

□ 외채 상환부담은 낮은 편

- GDP에 대한 외채 비율이 약 72.1%로 높은 편이나, 외채의 대부분 이 중장기 공적채무로 구성되어 있고 D.S.R도 1% 내외에 불과해 외채 상환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외환보유액은 수출 및 외국인투자 유입과 함께 대외원조가 증가하여 2005년 말 기준 9억 5,500만 달러(수입의 3.2개월 분)에 이르고 있음.

□ 정치 불안 등으로 주요 기관의 평가 제외

- 그동안 정치적 불안정 등의 이유로 S&P, Moody's, OECD 등 주요 국제신용도 평가기관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Euromoney 및 I.I. 만이 평가 순위를 발표하고 있음.

• Euromoney: 142/185(2005.03) => 127/185(2005.09) =>

148/185(2006.03)

• I.I. : 138/173(2005.03) => 139/173(2005.09) =>

136/173(2006.03)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EXIM) : 인수불가

- 네덜란드(Atradius): 제3국확인신용장에 대한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 영국(ECGD) : 제3국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인수가능, 중기

는 개별심사

- 독일(Hermes) : 단기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주요 국제기구의 지원 현황

-IMF

- 2005년 12월, IMF는 캄보디아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캄보디아의 대 IMF 채무중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의 모든 채무를 탕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금액은 8,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IMF는 채무탕감 사유로 캄보디아의 거시경제지표가 만족스러우 며 정부의 각종 보조금 축소와 빈곤감소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세계은행

- 2003년 9월 도로건설을 위해 2,000만 달러를 지원하였고, 2003년 12월 세계은행은 구조조정차관(Structural Adjustment Credit)의 잔여금 1,500만 달러를 공여하였음.
- 이 자금은 삼림분야 개혁이 조건이며 세계은행과 동국 정부간의 협상지연으로 2년간 연기되었던 자금임.

- ADB

 2003년 11월 ADB는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3,000만 달러 공여를 결정하였음. ADB는 2004년~2006년에 걸쳐 12개 프로젝트에 2억 3,9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함.

- JBIC

• 2004. 11, 시아누크빌 항구 확장을 위해 4억 3,130만 엔의 엔차 관을 공여함.

4. 기 타

□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단위 : 천 달러

구	분	2003	2004	2005	주요 품목
수	출	105,563	125,321	114,280	기 계 류, 화 학 공 업 제 품
수	입	4,200	6,949	5,962	농림수산물, 섬유류

자료: KOTIS

- 교역규모는 1억 5,000만 달러 수준에 불과

• 수출 : 144백만 달러

• 수입 : 6백만 달러

□ 제 8위의 경협 지원 대상국

- 대 캄보디아EDCF 지원은 총 4건에 750억원을 집행함으로써 제 8위의 지원 대상국임.



1. 관광산업

□ 2004년 이후 관광산업 호조

-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서 승인한 외국인 투자 중 관광분야가 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현 주력 경제 분야인 농업을 관광산업이 대체할 것으로 기대됨.
- 2003년 SARS의 영향으로 관광객 수가 70만명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으나, 2004년 들어 정국이 안정되면서 캄보디아의 전체 관광객 수는 2004년 106만명(51% 증가), 2005년 142만명 (35% 증가)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냄.
- 2006년 1월부터 7월 기간 중 캄보디아를 찾은 관광객 수는 93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18% 중가한 수치이고, 특히 시암립 지방의 앙코르 와트를 찾는 관광객 수가 크게 중가하고 있음.
- 2006년 1월~7월 기간 중 시암립을 찾은 관광객은 총 319,858명으로 전체 관광객 수의 34.16%를 차지함. 시암립을 찾는 관광객 수는

올해 말에 있을 '앙코르-경주 문화 엑스포 2006' ²⁾ 행사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앙코르 와트



□ 정부의 관광 진흥 정책

- 정부는 앙코르와트를 찾는 관광 수요 중대를 위해 세계 주요 도시와
 시암립 간에 직항 노선을 대폭 확충하고 있으며, 주요 관광지에 국내외 투자자들의 호텔 건립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주요 관광구성을 크게 4개(시암립, 시아누크빌, 프놈 펜, 로탄크키리)로 나눈 뒤 각 구역을 용의 머리, 몸, 꼬리 등으로 형상화하여 캄보디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을 추진 중임.

²⁾ 경상북도와 캄보디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앙코르-경주 세계 문화 액스포 2006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2007년 1월 9일까지(50일간) 캄보디아 시암립주 앙코르 와트 유적군 일원에서 열리며, '오래된 미래-동양의 신비'를 주제로 30개국이 참가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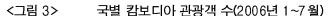
- 관광부는 관광객 1인당 평균 약 500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체 관광산업 수입이 2003년 5억 2,600만 달러, 2004년 7억 7,7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하였음.
- 정부는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 회간접자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확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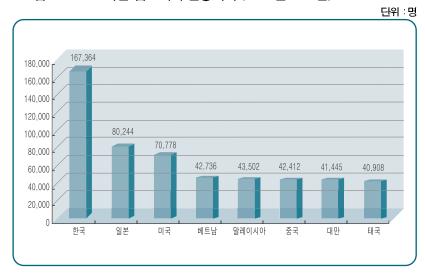
<그림 2>

타프롬 사원



- 이러한 계획은 시암립의 앙코르 와트, 시아누크빌의 해변, 토속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 각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과 교통시설 개선을 중심사업으로하고 있음.
- 또한 이들 계획 중 정부의 시암립으로의 해외 직항노선 확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캄보디아 관광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에 접어들면서 직항노선을 일주일 4번 운항에서 28번 운항으로 대폭 확대하였음.





자료: Ministry of Tourism

- 2006년 1~7월 기간 중 캄보디아를 찾은 관광객 중 한국인이 17만 명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4> 캄보디아 관광객 방문 현황(2004~2005년)

	2004년		2005년		증 가 율 (%)
	관광객 수	점유율(%)	관광객 수	점유율(%)	
비행기					
프놈펜	316,748	30.02%	416,396	29.29%	31.46%
시암립	309,373	29.32%	440,125	30.96%	42.26%
육로와 선박이용	361,238	34.23%	476,479	33.52%	31.90%
프레아 비헤아르	67,843	6.43%	88,615	6.23%	30.62%
합 계	1,055,202	100.00%	1,421,615	100.00%	34.72%

자료: Miaistry of Tourisn

2. 정보통신(ICT)산업

가. 정보통신산업 개황

(1) 정보통신 관련 주요 기관

- □ 우정통신부(Ministry of Posrs and Telecommunications MPTC)
- 캄보디아 우정통신부는 우편, 전화 등 체신산업의 인허가, 규제 등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통신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감독 및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음.
- 국내 및 국제 유선통신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 전화 분야는 MPTC와 외국인투자자간의 합작기업 설립이 가능함.

□ 국가정보통신기술개발청(National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Development Authority: NiDA)

① 개 요

- 국가정보통신기술개발청(NiDA)은 2000년 8월에 설립된 장관위원 회 산하의 정부 조직임.
- NiDA의 설립 목적은 캄보디아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의 정보통신산업 개발 전략 수립
 - 자국 경제성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보통신산업 정책을 수행
 - 정부 내의 모든 정보통신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감사 업무를 수행

② NiDA와 전자정부

- NiDA는 최근 한국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정부행정정보시스템 (Government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GAIS)을 구축 하였음.
- GAIS 네트워크는 차량 및 오토바이 등록, 부동산 등기, 주민 등록 등으로 구성된 전자정부 기능과 이를 위한 전자승인시스템 (Electronic Approval System: EAS)으로 구성되어 있음.
- NiDA의 관리 하에 전자정부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으며 전자승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각 부처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캄보디아 정부

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는 G2G(government to government) 형태로 각 정부 기관들을 전자정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는 것임.

③ NiDA의 IT인력 개발

- NiDA에서도 정부 관리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IT 기술에 대한 연수와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각 지방 단체를 포함하여 전국의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 관리들이 전자정부 도입에 따른 업무 변화에 잘 적웅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 대한 IT 교육에 집중하고 있음.

(2) 주요 정책

□개요

- 캄보디아의 ICT 정책은 모든 산업부문에서 요구되고 있는 ICT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본적으로는 e-mail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특히 전자정부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현대적 ICT 기 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ICT 정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정부도 정책 수행의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캄보디아 정부는 2003년에 ICT 산업의 발전이 자국의 사회, 경제 개발에 필수 요소임을 선언하고 캄보디아 ICT 정책의 발전 목표를 ① 인프라 개발, ② 정책 환경 조성, ③ 기업 개발, ④ ICT 컨텐츠 및

응용 부문 개발, ⑤ 인력개발 등의 5개 부문에 집중할 것은 발표하 였음.

□ 인프라 개발

- 캄보디아 정부의 2006년도 ICT 정책 초안에 의하면 경제개발과 ICT 산업 개발을 위해 안정적이고 범용되는 통신 네트워크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임을 밝히고 있음.
- 이 통신 네트워크는 캄보디아 전역에 걸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음성, 데이터,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나, 오랜 기간의 전쟁과 내전으로 대부분의 인프라가 파괴된 캄보디아로서는 정부의 재건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족, 기술 및 노하우의 미비 등으로 통신 시설의 구축은 미약한 실정임.
- 최근 무선 통신 가입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통신 및 인터넷 보급률은 국제기준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변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 은 상황임.
-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ICT 활용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유화 정책 추진, 감독 기능과 규정 제정에 대한 정부의 권한 강화, 경쟁 유도 등을 통해 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정책 환경

- 캄보디아가 정보화에 기초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ICT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법규의 제정과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가 필요함.
- 상거래 부문에 있어서도 정부는 e-commerce, 전자서명, 전자 지불,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 범죄 예방, 네트워크 보안, ICT 관련세제, 법률 분쟁,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비해야 함.
- ICT부문에의 국내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무역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ICT 부문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해야 하며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ICT 관련 중요 제품을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 입관세의 인하 또는 면제를 적용
 - 데이터, 통신, 정보 기술관련 전자장비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관세를 주변국보다 낮추어 투자 확대를 유도
 - ICT 부문에 대한 100% 외국인투자를 허용
 - ICT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 기업 개발

- 캄보디아 정부는 ICT 산업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국내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가 동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음. 단 외국인투자자가 ICT 부문에 투자하

려면 동 기업의 기술을 캄보디아에 전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ICT 정책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자가 ICT 부문으로 100% 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ICT 장비에 대한 수입 관세를 경감시킬계획임.
- e-commerce, 전자 거래, 인터넷 뱅킹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 개선과 함께, 이러한 전자 거래가 국제적 기준에 맞는 효율성 및 안정성을 갖추도록 추진하고 있음.

□ ICT 컨텐츠 및 응용 부문 개발

- ICT 산업의 컨텐츠와 응용 프로그램이 풍부하지 않다면 최종 사용자(end-users)가 많지 않을 것이므로 동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 다수의 최종 사용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이 필수요건임.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는 다음과 같은 부문을 중심으로 컨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① 현지어 사용

- ICT 산업 발전에 있어 사용 언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캄보디아 IT 산업에 크메르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 들이 IT 산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 수단임.
- 또한 풍부한 지역 컨텐츠의 생산이 ICT 산업의 확산에 중요 요 인이 됨.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ICT 산업에 필요한 언어 기

준, 특히 Unicode³ 기준이 크메르어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음.

② 전자정부 활용

- 캄보디아의 전자정부 수준은 초기 단계로 많은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부문임.
- 전자정부가 우선적으로 구축해야할 부문은 캄보디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민원 부문이며, 동 부문 관련 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나.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현황

(1) 통신산업

□ 유선통신

- 캄보디아 내 주요 유선통신 사업자는 캄보디아 내의 모든 통신 산업을 관할하는 우정통신부와 Camintel사, Camshin사 등 3개사임.
- 우정통신부는 정책입안자로서 시장참여자들의 관리자일 뿐만 아니라, 통신 서비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장참여자이기도 함.
- 한편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유선통신라인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캄보디아에서는 민간기업들이 유선통신산업의 중추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³⁾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2바이트계의 만국 공통의 국제 문자부호 체계(Universal Code System: UCS)를 말함. 애플컴퓨터 · IBM ·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유니코드(Unicode)가 1990년에 첫 버전을 발표하였고, ISO/IEC JTC1에서 1995년 9월 국제표준으로 제정하였음. 공식 명칭은ISO/IEC 10646-1(Universal Multiple-Octet Coded Character Set)임.

- 대표적인 기업이 Carmintel사로, 이 회사는 캄보디아 정부와 인도네시아의 PT Indo sat(지분49%)사의 합작회사로 1995년 5월 설립되었음.
 - •이 회사의 정보통신 기간망 구조는 대부분 UNTAC(the United Nations Transnational Authority in Cambodia)으로부터 인계받았다. Camintel사는 UNTAC으로부터 시설들을 인계받은 이후 시설들을 개선하여 1996년 2월 26일 전국적인 규모로 시장에 진입하였음.
 - Camintal사는 현재 Kandal, Krong Pailin, Otdar Mean Chey, Neak Loeng, Bavet 등의 지역을 제외한 캄보디아 전국에 유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5> 캄보디아의 유선통신 현황

단위 : 유선 라인 수 %

연 도	MTPC	Camintel	Camshin	전체 시장규모	
1997	10,463	2,817	6,564	19.844	
1997	(52.73)	(14.19)	(33.08)	19,044	
1998	13,835	3,436	7,157	24,428	
1990	(56.64)	(14.06)	(29.30)		
1999	16,467	4,625	7,281	28,373	
1999	(58.04)	(16.30)	(25.66)		
2000	18,861	5,238	6,018	30,117	
2000	(62.63)	(17.39)	(19.98)		
2001	21,013	5,595	5,340	31,948	
2001	(65.77)	(17.52)	(16.71)	ত।,540	
2002	22,206	6,898	5,340	34,444	
2002	(64.47)	(20.13)	(15.50)	J 4 ,444	

주: ()안은 시장점유율임 자료: UNESCAP 2003년 보고서

- 이밖에 1993년에 설립된 Camshin(Cambodia Shinawatra Co. Ltd.)사가 있음. Camshin사는 아시아에서 위성산업분야에서 선두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태국의 Shin Satellite PLC사의 자회사로, 현재 Shin Satellite PLC사는 Thaicom1, Thaicom2, Thaicom3, iPSTAR 등 네 개의 위성을 운영하고 있음.
 - 처음 유선전화사업을 시작할 당시 Phnom Penh으로 통시 서비스 지역이 제한되었으나, 이후 Camshin사는 서비스 공급규모를 비약 적으로 늘려 현재는 캄보디아 전역에 유무선 전화서비스(GSM 1800, GSM 900)를 제공하고 있음.

□ 무선통신

- 캄보디아의 통신 산업에서 이동통신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캄보디아는 인구가 넓은 지역에 흩어져 분포하기 때문에 이동 통신 서비스는 유선통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캄보디아 정부에서 이동통신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는 시기에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 된 것도 캄보디아의 이동통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며, 캄보디아 정부도민간 부문의 이동통신 산업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여타 국가들에서는 이동통신이 유선통신에 대한 보완적 인 통신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이동통신 이 유선통신의 대체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 이로 인해 1993년에 캄보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동통신 사용량이 유선통신 사용량을 넘어서는 국가가 되었고, 2000년에는 전체인구의 5분의 4가 이동통신을 이용하게 되었음.

<표 6> 캄보디아의 통신사업자 현황

단위 : 유선 라인 수,%

회 사 명	사업개시연도	주 요 사 업
MPTC	1993	유선 통신, 국제 기간망 연결
Casacom	1992	Samart로 알려진 900GSM 이동통신
Camtel	1992	아날로그 이동 통신(가입자 적음)
Camitel	1993	유선통신, 무선가입자 회선(WLL)
Tricelcan	1993~1999	아날로그 이동통신, 현재는 사업 중지
Camshin	1993	무선가입자 회선(WLL), CDMA 시업 예정
Camshin	1998	GSM 900~1,800 이동 통신
CamGSM	1997	GSM 900~1,800 이동 통신

자료: KADO, 2006 Korea-ASEAN IT Cooperation Seminar, 2006.

- 캄보디아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태국을 중심으로 비교적 많은 외국 인 투자를 유치하였음.
- 1995~2002년 동안 이동통신 산업의 성장률은 55%에 달한 반면 유선통신 산업은 22% 성장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이동통신 산업의 고성장에 힘입어 통신 산업의 전체 성장률은 47%를 기록하였다. 이동통신의 빠른 성장은 통신 밀도를 증대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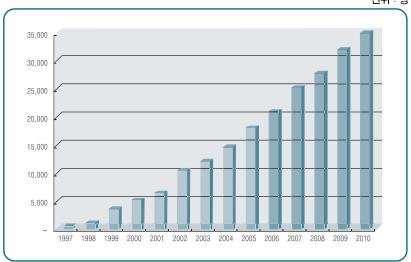
□ 인터넷

① 인터넷 현황

- 캄보디아에서 e-mail을 사용하게 된 것은 1993년부터이지만 인터 넷이 상업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1997년에야 시작되었음.
- 2001년 중반까지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국영 Camnet사와 Bigpond 사 등 2개 업체에 불과하였음.
 - Camnet사는 MPTC 산하 기관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요 의사결정이 정부에 의해 이루어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서 시장의 빠른 수요 중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1997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Bigpond사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복점(duopoly)체제를 유지한 2001년까지 신규 업체의 진입 금지

<그림 4> 인터넷 가입자 증가추이 및 전망

단위 : 명



자료: KADO, 2006 Korea-ASEANIT Cooperation Seminar, 2006.

를 보장 받은 대신 전체 수익의 최대 40%까지를 MPTC와 배분하는 체제를 유지하였음.

- 국제통신연맹(ITU)의 조사에 의하면 2001년 6월 기준 캄보디아 전국에 걸쳐 인터넷 사용자는 약 8,000명⁴⁾ 수준이었는데 이 중 1,796명은 Camnet사 가입자임.
- Camnet사 가입자중 65%는 개인, 28%는 기업, 정부 4%, 교육기관 3%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Bigpond사의 경우에는 2008명의 가입자중 90%가 프놈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10%는 시암립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최근의 대폭적인 요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서 인터넷 요금의 사용은 전반적인 소득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⁴⁾ 인터넷 가입자가 아닌 사용자 수를 의미함.

• 인터넷이 처음 도입된 1997년에는 시간당 인터넷 사용 요금이 7 달러에 이르렀음. 2005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383달러임을 감안하면 상상하기 힘든 비용이었던 것임.

AILAND

Siem Reap
Stoeung Treing

CAMBODIA

C

<그림 6> 캄보디아 인터넷 기간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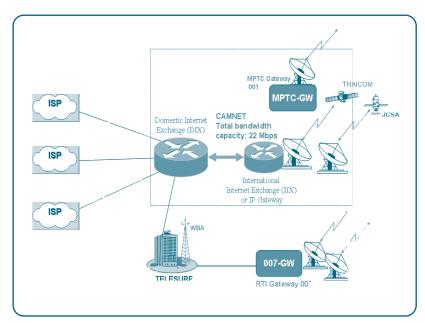
자료: KADO, 2006 Korea-ASEANIT Cooperation Seminar, 2006.

② 광 통신망

- NiDA 발표에 의하면 캄보디아의 광 통신망은 1998년 독일 정부가 무상 지원해 준 캄보디아 북서쪽 태국 국경 근처의 Poi Peit에서 남 동쪽 베트남 국경지역인 Bavet까지의 광 통신망이 유일한 인터넷 기간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광 통신망이 프놈펜시와 6개 지방을 연결하고 있음.

- 캄보디아 우정통신부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몰려 있는 시암립 지역에 광 통신망을 연결하기 위해 Banteay에서 Siem Reap까지의 광 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캄보디아 정부는 인터넷 기간망을 기반으로 초고속 인터넷, 화상 회의, 장거리 인터넷 교육 및 인터넷 전화 등을 보급할 계획임.
- ③ 인터넷 중계(Internet Exchange)
- 우정통신부의 관할 하에 Camnet사가 인터넷 기간망을 각각의 인터넷 사업자(ISP)에게 연결해 주는 인터넷 중계사업자(Internet Exchange Provider)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 인터넷 중계 (International Internet Exchange: IIX)와 국내 인터넷 중계 (Domestic Internet Exchange: DIX) 역할을 모두 담당하고 있음.

<그림 7> 인터넷 중계(Internet Exchange) 구성도



자료: KADO, 2006 Korea-ASEAN IT Cooperation Seminar, 2006.

- 국제 인터넷 중계(IIX)사업자는 해외 인터넷 기간망을 국내 인터넷 사업자(ISP)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며, 국내 인터넷 중계(DIX) 사업자는 국제 인터넷 기간망을 거치지 않고 국내 인터넷 사업자간 의 연결 역할을 하고 있음.
- 한편, 캄보디아 내 local contents의 활성화 정도를 알 수 있는 도메 인 등록 현황을 보면 우정통신부가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캄보디아 도메인(kh 사용 도메인) 수가 320개에 불과하고 전체 도메인 수도 1.320개로 local contents가 매우 빈약한 상태임.

(2) 소프트웨어 산업

- 캄보디아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 을 만큼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대부분의 운영체제(O/S)와 응용 프로그램들을 캄보디아 시내에서 1~3달러에 구입할 수 있어 소프트웨어 산업은 아직 형성되지도 않 은 상황임.
- 그러나 캄보디아의 WTO 가입 이후 캄보디아 내에서도 불법 소프 트웨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3) 하드웨어 산업

- 캄보디아의 첫 번째 컴퓨터 매장은 1992년에야 보급되었고 당시에 는 모뎀 같은 기초적인 관련 기기들의 매장내 보급도 이루어지지 않 아 필요 기기들은 싱가포르에서 직접 수입을 해야 하였음.

- 최근에는 수십 개의 컴퓨터 매장에서 컴퓨터 관련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조립 완제품들도 나오고 있음.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이들 나라들로부터 컴퓨터 관련 부분품들의 유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트북의 경우에는 A/S의 경우에도 싱가포르로 보내야만 하는 실정임.
- 최근 컴퓨터를 판매하는 소매 업체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이 컴퓨터 공급,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수리, 프로그램 설치,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캄보디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및 관련 기기의 대부분은 일본, 미국, 한국 등으로부터 들여온 중고 제품으로 이들은 이 중고 제품 들을 현지 실정에 맞게 조립하여 사용하고 있음.
- 이들 중고 조립 컴퓨터의 가격은 일정 수준이 되는 경우 300~500 달러이며 저렴한 것은 100~150달러에 불과한 제품도 있다. 컴퓨터 소매 업체들은 컴퓨터 관련 거의 모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아직 각각의 비즈니스에 적합한 프로그램 제작 및 관련 하드웨어의 제공 업무 등을 할 만한 수준은 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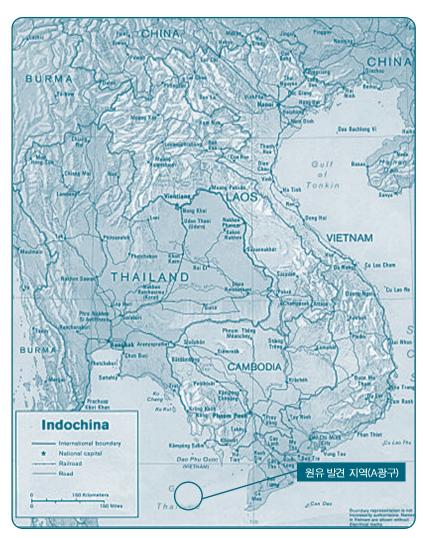
3. 에너지 개발산업

□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하지원 보유

- 캄보디아에는 석유, 금 등 중요한 지하자원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지 만 오랜 동안의 전쟁으로 그 개발이 지연되어 왔음. 유전의 탐사도 주변국들보다 20년이 지난 1992년에야 시작할 수 있었음. 다른 지 하자원은 상당한 매장량의 징후가 있음에도 아직 그대로 미개발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임.

□ 캄보디아 유전개발

- 석유 및 가스분야에서는 1965년 최초의 광구 분양 이후 Elf, Exxon, JNOC, Chevron사 등 메이저 기업들이 적극적인 탐사에 나 서고 있는 가운데 양질의 석유와 가스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 로 판명됨. 특히, A해상 광구의 경우 원유 4.1억 배럴, 가스 3조 입 방피트의 가채 매장량을 지닌 것으로 추정됨.
- 캄보디아 유전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 시아-미얀마로 이어지는 아시아 오일벨트를 형성, 지역경제 구도 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다만, 정부는 오랜 내전으로 인한 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외국 인 기업을 동반한 합작투자 또는 민간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그림 8> 캄보디아 해상유전 블록 A광구의 위치

<참 고 2> GS칼텍스, 캄보디아 해상 블록 A 유전에서 원유 발견

□ 캄보디아 서부해상에서 원유 발견

- GS칼텍스주식회사(대표이사 회장 허동수) 는 캄보디아 해 상 블록 A 광구내 4개의 탐사정에서 원유를 발견했다고 발표함.
- 동 광구는 캄보디아 서부해상 13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총 면적 6,278 k㎡, 평균수십 70~80m 의 해상광구로 GS칼 텍스 (지분15%)는 2003년 1월부터 파트너사인 Chevron Overseas Petroleum (Cambodia) Ltd. (지분 55%) 및 MOECO (Mitsui Oil Exploration Company) Cambodia Ltd. (지분 30%) 와 함께 탐사작업을 진행 중임.

□ API 비중 44, 양질의 원유로 확인됨.

- 시추를 통해 확인된 원유 함유층 두께는 41~139 피트이며, 발견된 원유는 API 비중 44인 양질의 원유로 확인되었음.
- 현재 캄보디아 해상광구에서 2기 탐사작업을 진행 중이며, 2기 작업이 끝나는 2007년에 광구의 개발 가능성 및 매장량 규모 등 보다 정확한 경제적 효과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전 망됨.

자료 : GS칼텍스 보도자료

□ 기타 광물지원

- 이 밖에 캄보디아의 지하자원 중 금, 은, 보석류(루비, 사파이어, 지리콘, 자수정, 오팔, 수정 등), 인산광(비료용), 석회석(양질의 시멘트용), 보크사이트(알루미늄 원료), 점토(세라믹, 시멘트용), 규사(유리용) 등의 매장량도 상당함.

4. 섬유산업

□ 2005년 이후 급격히 성장

- 최근 제조업 부문 성장은 섬유산업이 주도하고 있음. 캄보디아 경제에서 섬유산업은 제조업 성장률과 고용 측면에서 중요성이 점차 중대되고 있으며, 현지자본에 의한 성장 보다는 외국인 투자에 의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2004년말 WTO의 의류쿼터제도인 섬유의류협정(ATC; Agreement on Textile and Clothing)이 종료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저가의류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어 캄보디아 섬유산업의 쇠퇴가 예상되었음.
- 그러나 2005년 중국이 미국·EU 사이에서 섬유수출자유규제에 합의함에 따라 중국의 이 지역에 대한 섬유수출이 줄어들었고, 그 반사효과로 캄보디아의 대미 섬유수출이 25% 이상 중가하였음.

□ 당분간 섬유산업 지속적으로 발전할 듯

- 캄보디아 섬유산업은 내수보다는 수출지향적이고, 주요 수출대상 국이 미국인 점을 고려할 때, 이 협정의 발효는 당분간 캄보디아가 섬유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 미국의 주요 의류제조사인 나이키, 리복 등이 캄보디아내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키로 함에 따라 캄보디아의 섬유산업은 더욱 활기를 띠고 제품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섬유산업의 생산성 증가로 캄보디아 GDO의 15% 차지

- 국제노동기구는 기금 마련을 통한 "Better Factories Cambodia" 사업 진행을 통하여 캄보디아내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생산성 중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 결과, 캄보디아 내 섬유산업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성장률은 2003년 12.1%에서 2004년 17.4%까지 큰 폭으로 증가 하였고, 수출액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6.9억 달러에 이르러 전년 동기대비 26.4% 증가하였음.
- 2004년도를 기준으로 캄보디아 총 제조업에서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2%,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이르고 있고, 약 25만명이 섬유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Ⅳ 외국인투자 환경

1. 외국인 투자정책 및 절차

가. 외국인 투자정책

□ 개 황

- ASEAN 지역의 저소득국인 캄보디아는 국제 지원 및 원조가 여전 히 경제 개발을 위한 주요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는 진정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촉진이 필수적임을 인식,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캄보디아는 1994년 투자법 제정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원 스톱 서비스 제공기관인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를 설립하였고, 각종 투자유인책을 마련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일련의 개혁조치 단행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 총리가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는 투자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하 실무기관으로 민

간부문은 캄보디아 투자위원회(Cambodian Investment Board: CIB)가, 공공투자와 국제지원 부문은 캄보디아 복구개발위원회 (Cambodia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 CRDB)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동 위원회는 주요 관세 및 세금 면제를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등록, 비자 및 고용허가 등 외국인 투자가들의 현지기업 활동을 관리 지원함. 캄보디아의 복구, 개발 및 투자 활동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평가 및 승인하고 있으며, 투자신청서 접수 후 28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공고하여 투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 주요 업무

- 복구작업, 개발과 투자 유치활동을 책임진 정부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개발계획과 정책입안의 준비를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도
- 국제사회, 양 당사국, 국제조직, NGO 등과 협조하여 그들이 캄보디아의 경제환경과 개발계획을 이해하도록 하여 국제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활동
- 정부부처간의 활동과 원조국 및 투자가가 행정기관과 협의시 최 대한의 편의 제공
- 캄보디아 개발과정에 필요한 공공 및 민간자원 이용안내와 편의 제공
- 행정절차의 편의제공과 간소화를 통한 원조국과 투자가에의 협조
- 복구, 개발 및 민간 사업부분의 투자에 관련된 서비스업무 검토 및 결정

- 국무회의 의결사항
 - 자본금 5,000만불 이상의 프로젝트
 -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연계된 사안
 - 지하자원과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
 -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사안
 - 장기적인 정책수립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 BOT(Built, Operate, Transfer), BOOT(Built, Owned, Operate, Transfer), BOO(Built, Owned, Operate) 및 BLT(Built, Lease, Transfer)에 관련된 사업

<참고 3> 캄보디아에 투자해야할세 가지 이유

□ 지역적 이점

- -1,400백만명의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지리적으로 ASEAN[®] 의 중심에 위치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임. 캄보디아는 1999년 총인구 규모 5.5억명, 총 GDP 규모6,000억 달러의 ASEAN에 가입하였음.
- ASEAN 지역내 자유무역으로 2010년까지 각국의 수출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0~5%로 낮아지고, 2018년에는 수입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⁵⁾ ASE AN회원국은 총 10개국으로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임.

- ASEAN은 2010년부터 시작될 중국-ASEAN 자유무역 협정 의 발효로, 인구 17억 규모의 경제공동체로 거듭날 것이고, 현 재 인도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 중임.

<그림 9> ASEAN 회원국



□ 개방경제

- 2003년도에 발표된 Heritage Foundation의 조사결과에 따 르면, 캄보디아의 개방 정도는 전 세계 170개의 국가 중 35 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일본과 같은 수준이고. 이웃국가들 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Heritage Foundation 의 국가 개방지수는 그 구성요소로 재정적자, 제도적 규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무역정책의 효율성 등을 포함하고 있음.

⁶⁾ 태국 : 40위, 말레이시아 : 72위, 인도네시아 : 99위, 베트남 : 135위, 라오스 : 153위

- 캄보디아는 여타 저개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간접시설 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은 투자자들 로 하여금 캄보디아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캄보디아는 저개발 국가 중에서 시장친화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음.

□ 관광산업과 노동력의 강점

- 캄보디아의 관광산업은 외국인 직접투자처로서 매우 큰 매력을 갖고 있음. 앙코르 와트로 대표되는 캄보디아의 관광산업은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 또한, 캄보디아는 다른 나라들에 비교하여 비교적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비록 숙달된 노동자들은 아니지만,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근로의욕이 높고 근면성이 강함. 무엇보다 임금수준이 태국의 가장 낮은 지역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않아 임금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음.

자료: UN. An Investment Guide to Cambodia. 2003

□ 투자법 주요 내용

- 외국인 투자보장 원칙
 - 외국인의 100% 소유지분 인정
 -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를 동일하게 취급(헌법에 규정된 토지소유 예외)
 - 외국인은 70년간 토지임대 가능(농업 이용시 99년), 이후 임대계 약 갱신 가능
 - 외국인 소유 자산의 국유화 불가
 - 투자자가 생산하는 제품 가격의 인위적 조정 불가
 - 국내에서 기술인력 채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고급 인력 고용 가능
- 외환 해외송금의 자유 보장
 - 대금지급과 국제금융 조달자금의 원금과 이자 상화
 - 로열티와 관리비 지급
 - 이윤 송금 및 적법한 절차에 의거, 투자 철회 시 투자 자본금 반출 가능

□ 투자 관련 법령

- 캄보디아 투자법(Law on Invest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No. 03/NS, 1994. 8. 4)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조직 및 기능 시행령(Sub-Decree No. 51 ANK-BK on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 1995. 6. 26)

- 캄보디아 투자법 시행령(Sub-Decree No. 88 ANK-BK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Invest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1997, 12, 29)

□ 대외관계

- 캄보디아는 주요 무역 상대국인 EU,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과 일반관세특혜제도를 체결하고 있고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음. 또한,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및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회원국이고, ADB(Asian Development Bank)와의 협정체결을 통해 투자자들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나. 투자인센티브 정책

□ 주요 투자 관련 인센티브

- 금융상의 특별우대는 없고, 세제측면에서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있으며, 외환송금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음.
- 법인세 인센티브
 - 법인세 9% 부과
 - 프로젝트 성격, 정부 우선 사업분야 투자 시 최장 9년간 법인세 면제
 - 인센티브는 정부권장지역에의 공장소재 여부, 투자금액, 캄보디 아 근로자 채용 정도, 국내자원 사용여부, 기술교육훈련 여부 등 에 가중치 부과 후 종합산정하여 결정함

- 법인세 면제 혜택을 못받는 경우, 제조와 가공에 사용되는 유형자 산에 대하여 자본의 40%까지 특별감가상각 허용
- 결손은 5년간에 한해 이월 공제
- 기업이윤 재투자 시 재투자분에 한해 법인세 면제
- 배당금, 이익금의 경우 국내외 지급을 불문하고 비과세

- 수입관세 면제

- 아래에 쓰이는 건설자재, 생산수단, 장비, 중간재, 새로운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하여 수입관세 100% 면제 최소한 생산품의 80%를 수출하는 수출 위주산업, 특별진흥지대 (SPZ)내의 공장 보유기업, 관광산업, 임가공산업, 농업, 기간산업, 에너지 산업
- 마약이나 무기, 탄약, 위험물품에 대해서는 제한조치 시행. 원재료나 중간재로 사용되는 연료, 윤활제, 기타 석유제품도 수입시수입관세 면제에서 제외
- 캄보디아의 관세구조는 0%, 7%, 15%, 35% 4가지 관세로 구분 되며, 2010년부터는 아세안자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rea)에 의해 ASEAN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은 0~5%의 관세 만 부과됨

- 수출세 면제

• 수출지향 산업의 경우 100% 수출세 면제

- 외국인 투자제한

• 캄보디아에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업종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아래 분야의 경우 법인세 인하, 수입, 관세 면제 등 투자 인센 티브를 받을 수 없음.

무역업, 운송 서비스업, 면세점, 음식점·가라오케·바·마사지 클럽 등, 상점, 라디오·TV·신문 발간 등 미디어 관련 산업, 도·소매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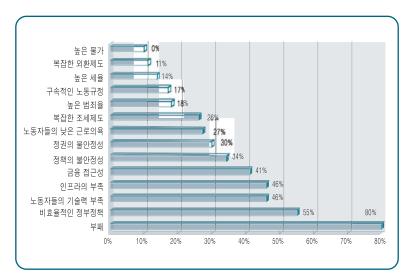
• 개정 투자법은 특별진흥지대에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 브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나 특별진흥지대 관련법은 아직 발효되 지 않고 있으며, 자유무역항도 없음.

<참고 4> 대 캄보디아 외국인 직접투자 애로요인 및 성장 경쟁력 지수

□ 대 캄보디아 외국인 직접투자 애로요인

- EIC(Economic Institute of Cambodi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의 영업활동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은 정부 공공기관을 포함한 도덕적인 부패인 것으로 나타남.
- 정치적, 도덕적 부패를 막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률제도 또는 금융부문 제도 개선이 아닌 공공기관 혁신이 선행되어야 함.
- 현재까지 정부의 개혁 노력은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짐. 공공 기관의 부패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외국인 투자가 유입될 수 있고,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어야 캄보디아의 기술축적과 경제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10> 대 캄보디아 외국인 직접투자 애로요인



자료: EIC, Executive Opinion Survey 2005 in Cambodia, February-April 2005.

□ 캄보디아의 성장 경쟁력 지수

- 세계경제포럼에서의 조사결과 캄보디아의 성장 경쟁력은 117
 개국 중 112위를 기록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캄보디아의 열
 악한 산업분야들에 의한 영향이 큼.
- 캄보디아의 낮은 거시경제 환경 지수는 정부의 재정적자 누적, 큰 폭의 예대 금리차, 기업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 비효율적인 정부의 재정 운영을 반영함. 캄보디아 거시경제 변수들의 불안정성 또한 캄보디아의 높은 국가 위험도를 반영함.
- 캄보디아 공공기관 지수는 117개국 중 114위를 기록하였는데,이는 공공기관이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함.

- 공공기관의 심각한 수준의 부패와 계약과 법률에 대한 불신은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캄보디아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음.
- 기술 분야 지수 역시 105위를 기록하였음. 기술 후진국으로 서 대부분의 기술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그러나 R&D에 투자하는 기업은 극히 드물고, 이에 대한 관심도 저조한 상황임.

<표 7> 성장 경쟁력 지수(Growth Competitiveness Index) (2005년도기준)

	GCI		거시경	제환경	공공	기관	기술	분야
			지수		지수		지수	
국 가	순 위	점 수	순 위	점 수	순 위	점 수	순 위	점 수
핀 란 드	1	5.94	4	5.52	5	6.19	2	6.02
미 국	2	5.81	23	5.07	18	5.77	1	6.19
싱가포르	6	5.48	1	5.82	4	6.25	10	4.93
일 본	12	5. 18	42	4.40	14	5.84	8	5.24
태 국	36	4.50	26	4.94	41	4.88	43	3.69
중 국	49	4.07	33	4.61	56	4.41	64	3.18
인도네시아	74	3.53	64	3.87	89	3.58	66	3.13
베 트 남	81	3.37	60	3.96	97	3.43	92	2.72
방글라데시	110	2.86	83	3.43	117	2.55	101	2.06
캄보디아	112	2.82	104	3.04	114	2.90	105	2.51
파라과이	113	2.80	102	3.07	112	2.97	111	2.35

자료: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5-2006,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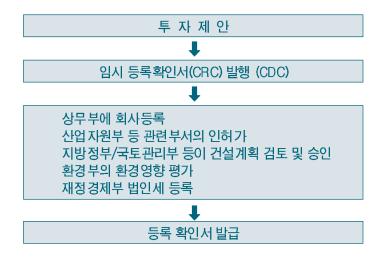
주) 1: 경쟁력이 매우 약함, 7: 경쟁력이 매우 강함.

다. 외국인 투자 절차 7

(1) 투자신청 절차

- □ **투자허가 기관**: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 미화 50만 달러 이상에 해당되는 외국인 투자는 캄보디아 정부가 설립한 일괄 투자숭인 서비스 기관이 CDC를 거쳐 투자숭인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
- CDC는 투자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은 물론, 주요 관세 및 세금 등을 면제해 주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 투자자를 대신하여 임시등록확인서(CRC: Conditional Registration Certificate)에 기재된 모든 관련 부처로부터 허가취득을 대행함.

□ 투자신청 절차



^{7) &#}x27;동남아의 숨은보석 캄보디아 투자전략', KOTRA, 2005. 11 내용을 주로 참고함.

□ 투자 신청

- 투자자는 투자제안을 위해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 투자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CDC는 완비된 투자허가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28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해 줌.
- 다만, 만약 해당 투자가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하거나 여러 정부 기 관의 허가와 관련된 광업, 임업 또는 건축과 같은 제한된 분야인 경 우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음

□ 투자신청 시 제출서류

- 투자신청서(Form CIB OIA), 프로젝트 자금조달 타당성 조사, 최근 연차보고서, 신청금(US\$ 100) 등

(2) 투자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자 개요

- 프로젝트 설명
- 활 동 분 야: 농업, 건설, 에너지, 금융, 산업, 광업, 통신, 관광, 수송,기타
-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국적, 주소, 전화, 팩스, 신청자의 지위
- 모 기 업:회사명,주소,전화,팩스
- 지 역 본 부:주소,전화,팩스
- 캄보디아 회사와 관련이 있을 경우 동 회사명, 주소, 전화, 팩스
- 투자희망지역(지역, 도시명)

□ 재무정보(미 달러로 기재)

- 자 본 금: 등록자본금, 납입자본금, 주당가액
- 주식보유비율: 외국인 보유주식(비율, 가액), 캄보디아인 보유주식 (비율, 가액)
- - 글 융:외국자본융자(은행명), 국내자본융자(은행명), 운전자본
- 주요투자가액: 토지(면적S/M), 공장(S/M), 사무실(S/M), 기계, 기기,기타고정자산
- 외국인 주주 성명 및 주식 보유내역

□ 인력수급계획

- 기업운영 초기와 공장 완전 가동 시의 필요인력으로 구분
- 캄보디아인과 외국인으로 구분
- 직종별구분(관리자, 기술자, 감독, 사무원, 숙련공, 비숙련공)
- 외국인인력 세부사항(국적, 지위, 고용원수)

□ 캄보디아인 직업훈련 계획

- 국내 직업훈련 교육일수(Man-day)
- 외국 직업훈련 교육일수(Man-day) 및 훈련실시 국가
- 직종별 훈련자수

□ 생산계획

- 생산품목별 생산량(최고/최저), 생산일수(최고, 최저)
- 연도별 생산계획(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 완전 가동시 소요 원자재(소요량, 가액)(국내조달과 해외조달로 구분)
- 국내부품 사용계획

<참 고 5> 단독투자 또는 합작투자 결정 시 유의할 점

□ 토지 구입 여부

- 현행 캄보디아의 헌법과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금지되어 있으나, 새롭게 설립될 합작법인의 지분 중 현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1% 이상이면 법인 명의로 토지 구입및 소유가 가능함.

□ 제3국 수출을 목표로 할 것인지, 내수시장을 목표로 할 것인지

- 캄보디아에서 제품을 생산한 후 제3국 수출을 할 경우에는 현지인 파트너의 기여도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수준임. 대부 분의 현지 파트너들은 노동력 동원, 작업감독, 토지제공 이상 의 능력은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생산제품을 제3국에 수 출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지인과의 합작은 불 필요함.

□ 현지인 파트너의 노하우 전수

- 상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현지 파트너의 매니지먼트 능력이 국내에서 기대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단독투자를 하더라도 대부분 1~2년 이내에 쉽게 체득할 수 있는 노하우에 지나지 않음.
- 한편, 토지의 경우 캄보디아는 토지 공급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풍부하여 저렴한 가격에 장기임대가 가능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꼭 소유의 개념에 집착할 필요성이 있는 지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물론 지가상승이 지역에따라 있는 편이지만 정작 지가 상승이 되었다 하더라도 환금성이 여타 국가보다는 낮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2. 외국인 투자 여건

가. 무역제도

□ 모든 수출입화물에 선적전 검사 적용

- 컨테이너로 선적되는 모든 수입물품, 5,000 달러 이상의 수입품은 캄보디아로 들여오기 전 수화물검사기관인 BIVAC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함.
- 수입 승인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나 군수품·의약품의 경우에는 내무부·보건부 등으로부터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마약류·폭발물·독성 화학물질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함.
- 목재, 제재목, 보석류, 골동품 수출 시에는 사전에 캄보디아 정부로 부터 수출 숭인을 받아야 함.
- 캄보디아에서 모든 수출입 품목 통관 시에는 선하증권(B/L),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상업송장(Invoice)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메콩강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승인서(Transit Licence)가 필요함.
- 캄보디아 상무부 산하기관인 CAM Control이 표준가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수입 시 구체적인 규격준수 여부 등의 지침이 정비되어 있지 않음.

□ 2000년 10월부터 중단되었던 선적전 검사 시행

- 선적전 검사는 SGS에서 대행하고 있었으나, 2006년 5월부터 BIVAC로 대행회사가 변경되었음. 선적전 검사제도는 1999년 11월 이후 중단 되었으나, 2000년 10월부터 다시 시행되었으며, 동제도의 부활은 캄보디아 정부의 종합적인 수입통관 개선책 CISS(Comprehensive Import Supervision Scheme)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음.
- 참고로, 캄보디아는 1995년 8월 이후 5년 간의 SGS 선적 전 검사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6,800만 미 달러에 달하는 검사 대행 수수료 미납문제로 선적 전 검사를 중단한 바 있음.
- 동 제도 시행 이후 캄보디아로 수출되는 거의 모든 물품은 수출국소재 BIVAC을 통해 선적전 검사(PSI) 후 CRF(Clean Report of Findings)를 발급 받아야 하며, PSI없이 선적된 물품에 대해서는 CIF(cost, insurance & freight) 가액의 7%가 벌금으로 부과됨. CRF에는 해당 수출품의 수량, 품질, HS코드 및 일반적인 수출가격들이 명시됨.
- 한편, 선적전 검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며 일반 물품에 대해서는 FOB 가액의 0.8%, 벌크 상태의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톤당 0.30달러를 부과하되 최소 금액은 건당 210달러임.
- 한편, 캄보디아 수출입 화물에 대해서는 CAMCONTROL이 수량 일치 여부 검사와 수량 차이에 대한 조사를 대행하며, 보험 서베이 역할도 대신하고 있음.

나. 노동여건

□ 유리한 노동여건

- 캄보디아는 1,4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51%가 노동 가능인구임. 캄보디아의 낮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전통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으며, 임금 수준 또한 여타 아시아 지역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월평균 임금 수준

- 교 사: 25~35 달러

- 공 무 원: 15~50 달러

-건설 노동자: 60~80 달러

- 공 장 노 동 자: 60~80 달러

- 서비스업 종사자: 50~60 달러

- 요 리 사: 70~100 달러

- 경 비 원: 60~80 달러

- 점 원: 80~100 달러

- 비 서 : 120~150 달러

- 사 무 관 리 직: 150~350 달러

□ 최저임금

- 노동부는 노사정 협의체인 Labour Advisory Committee 와의 협의를 거쳐 각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류제조업 (봉제산업)에만 월 45달러의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으며 신발제조업에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음.

□ 노동법

- 1997년 개정된 노동법이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노동에 관한 법률을 총괄함. 동 법은 1992년 제정된 노동법을 개정하여 근로 자들의 노동인권과 쟁의에 관한 권리를 확장하는데 기여하였음.
-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최장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8시간 이고, 시간외 수당은 평상시 임금의 1.5~2.0배를 지급하여야 함. 휴가는 매월 1.5일, 1년에 18일 이상 보장되어야 하며,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추가적인 휴가가 주어짐. 육아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한 여성 근로자에게 90일 이상 보장되며, 고용주는 이 기간 중 평상시 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함.

다. 조세제도

(1) 법인세

□ 모든 법인에 대해 20% 부과(다만 CDC 승인 법인은 9%)

- 법인세는 기업의 실제로 창출된 수익과 잠재적으로 창출된 수익에 과세함. 2003년 3월에 개정된 투자 관련 세법에 의하면, 모든 법인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자연자원 개발 사업과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의 숭인을 받은 외국인 투자법인은 9%의 세율을 부과함. 정부 우선 개발 분야의 경우 최고 9년까지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음.

- 개인 사업자에게는 0~20%의 누진세율을 부과하고 세전 이익이 55.000 달러 이상일 경우 20%의 세율을 부과함. 그리고 법인소득 세 납세 대상자는 전월 기간 동안 매출 실적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을 법인세로 납부하고 사후 정산케 되어 있음.

(2) 관 세

□ 개 황

- 일반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며, HSC® (Harmonized System Classification)를 기초로 하고 있음.
- 세율은 좋가세(ad valorem)이며,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를 기준으로 수입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수입관세는 Riel화로 부과되며, 화율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발표 한 환율에 따름.

□ 비과세 및 세금공제

- 다음에 열거된 수입은 세금이 면제됨.
 - CDC(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가 승인한 프로젝트성 및 투자성 수입. 사전승인이 필요함.
 - 살충제 등 농약, 농업에 필요한 투입물 및 농업 기계류(트렉터 제외)

⁸⁾ HS Code는 신국제 통일상품분류체계(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로서 일종의 무역상품의 분류 방식임.(세계적으로 거의 동일)

• 대사관, 국제기구,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민간단체 및 국가간의 쌍무인가 및 워조를 통해 자금이 조담된 프로젝트

□세 율

<표8>

관세부과 품목과 세율

구 분	주요 품목	세 율
사치성 소비재	사치성 소비재 자동차, 술, 담배, 총기류, 회장품 등	
왼제품	완제품 TV, 라디오, 카세트, 페인트, 가구류 등	
기계 및 부품	섬유기계, 기공기계 등	15%
원 · 부자재	시멘트, 철강, 타일 및 벽돌 등	7%
생활필수품	육류, 채소, 과일, 차, 식용유, 설탕, 비누, 안경렌즈,	
(の質 戸下古	신발, 의류, 자전거 등	7%
무관세 제품 농기계 및 부품, 문구류, 의약품, 스포츠 용품 등		0%

주) 자동차의 경우 용량의 크기에 따라 차등관세(40%~ 120%) 부과

(3) 부가가치세

□ 개 황

- 1999년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 체제 하에서 생산자는 매출세금 (output tax)을 지불하고, 중간재 구입자로서 매입세금(input tax)을 지불함. 생산자는 반드시 매출세금을 납부한 후, 그에 상응하는 공제를 받고 매입세금을 납부함.

□ 적용범위

 세금부과가 가능한 생산물 및 서비스에 적용됨. 부가가치세는 납세 필의 수입재에 부과되기도 하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재수출을 위한 담배, 주류, 수송제품들의 수입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음.

□ 과세대상 항목

- 조세 대상인(taxable person)이 현금이나 기타의 대가를 받고 공급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 조세 대상인이 사용을 위하여 구입되는 상품
- 조세 대상인 시가보다 싸게 공급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 개인사용(for personal services)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 수입되는 상품

□세 율

- 0% : 이는 캄보디아 수출품과 외국에서 소비되는 서비스에 적용되며, 수출품은 국제적인 수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함.
- 10%: 모든 부가가치세 적용품목에 해당함.

□ 면세 품목

- 공공 우편서비스
- 의료서비스와 의료 관련 상품들
- 소유자가 직접 운용하는 대중교통 관련 서비스
- 자선행위

□ 세금의 구성

- 매출세금은 세금부과 품목들의 부가가치세액의 합으로 계산함. CIF 수입가격과 수입관세 그리고 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에 부과됨.
- 부가가치세는 다음 요율을 적용, 상품 및 서비스에 과세함. 캄보디 아 내에서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10%. 캄보디아로 수입한 상 품이나 서비스 10%, 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0%.

□ 부가가치세 등록

- 신청서류: 신청서, 회사등록증, 영업세 등록필증, 회사정관

- 등록비용 : 없음

- 소요기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등록기관: 재경부 세제국(Tax Dept)(이메일: taxdept@fonum.org.kh)

(4) 거래세

□ 개 황

- 거래세(turnonver tax)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상품 및 서 비스에 부과되었으나, 1999년 1월 부가가치세의 시행 이후 부가가 치세 적용대상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적용이 곤란 한 분야에 대해 2%의 고정세 부과.

□ 거래세 면세 품목

-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비가공 농산물의 생산

- 특정 소기업 영업활동(국세청에서 지정함.)
- 수출품

□ 거래세의 적용

- 거래세는 총매출에 적용되며, 납부는 익월 10일까지임.

(5) 원천징수세

□ 원천 징수세의 적용

- 1997년에 제정된 세법에 따라 적용되며, 납부는 익월 15일까지임.

□세 율

- 관리, 중개, 건설, 수리, 상담 등과 관련된 용역서비스 수익 15%
- 로열티 지급, 광물 자원에 대한 이자 15%
- 동산, 부동산 임대료 10%
- 국내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 지급한 거주인에 대한 이자 6%

(6) 특별세

□ 개 황

- 특별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특정 상품과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부과됨.

□ 품목과 세율

- 국내제품에 적용되는 특별세
 - 국내에서 판매하는 국제선 항공료 및 국제 전화비 2%
 - 모든 종류의 음료수, 담배 및 유흥, 위락 서비스 10%
 - 모든 유류제품 및 2.000cc 미만의 승용차와 인정된 그 부속품 20%
 - 2,000cc 이상의 승용차와 인정된 그 부속품 30%
- 수입품에 적용되는 수입관세도 상품별로 차등 세율 적용
 - 생필품(의약품, 소금, 야채, 철재, 포장재, 설탕 등)
 - 기계, 장비류, 그 부품, 기계공구, 밀가루, 산업용 지하자원 제품 15%
 - 휘발유 등 유류, 가스, 디젤유, 윤활유 20%
 - 차량 40~120%
 - CDC의 투자승인을 받고 면세 혜택을 받은 기업은 수입관세 면제

(7) 근로소득세

□ 개 황

- 캄보디아는 세금 부담자의 국내 거주 여부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주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 비거주자에 대한 근로 소득세 적용은 캄보디아로부터 송금되는 부분에 한하여 적용됨. 지급하는 고용자의 위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가 캄보디아인지가 중요함.
- 캄보디아는 급여의 현금 지급과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구분하여 현금 지급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 하고 있음.

□ 거주자에 대한 규정

- 캄보디아 거주인 및 캄보디아에 182일 이상 거주한 자

□ 현금 지급 해당 항목

- 일반 급여, 시간외 수당, 상여금, 고용주의 대출금 등

□ 기타소득 항목

- 차량 사용 지원비, 주거생활 지원비, 저금리 대출과 할인가격 물품 공급, 교육 지원비, 보험료 지원, 연금과 복지기금 지원,

□ 근로 소득세 면제 항목

- 퇴직수당, 특정 여행수당, 원조기구 등 국제기구 관련 종사자의 급여

□ 현금지급 관련 세율(리엘화)

 $-0 \sim 500,000$: 0%

 $-500,001 \sim 1,250,000$: 5%

 $-1,250,001 \sim 8,500,000 : 10\%$

 $-8,500,001 \sim 12,500,000:15\%$

- 12,500,001 이상 : 20%

□ 비거주자의 현금지급 관련 세율

- 모든 비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15%로 동일함.

라. 기타제도

(1) 소비자 보호제도

□ 입법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법 집행 미미

- 국민소득이 극히 낮고 경제가 어려워 소비자 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00년부터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수입업자 주소, 연락처 등을 명기하게끔 입법되어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불량한 식품류의 유통을 규제하여 소비자의위생을 보호하고 있으나, 실제 법집행의 실효성은 떨어짐.
- 제조물 책임법은 현재 입법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 법안이 관련부처 에서 논의 중

(2) 지적재산권

□ 실질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는 어려운 상황

- 캄보디아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없음.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 사정에 비추어 고유의 인증제도는 당분간 도입하기가 어려울 전망임.

- 1996년 미국과의 무역협정에서 폭넓은 산업분야에서의 지적재산 권을 인정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단계적인 제도 도입에 합의 하였으나. 캄보디아는 현재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엔임시행정 기구(UNTAC)의 형사법과 1997년 제정된 지적재산권 보호법 (Ministry of Commerce Prakas No.368) 등이 있음.

(3) 외확관리

□ 국내경제 대부분 달러 사용

- 캄보디아 정부는 달러화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통화정책 및 외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캄보디아 외환 체계는 달러화에 대한 높은 의존도 및 현금거래 선호에 따라 외환관리를 포함한 정부의 통화정책 수립이 곤란.
- 현지화인 리엘화의 사용은 소규모 거래나 공무원들의 급여지급 등에 국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중 통화체제 하에 경제가 운영되고 있음.

□ 금리 자유화가 시행 중이나. 중앙은행은 가헐적으로 외환시장 개입

- 금리자유화 시행과 은행 대출한도제도가 없어 중앙은행은 직접적인 금융정책을 사용이 용이하지 못함. 따라서 리엘화 안정과 관련된 외환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앙은행은 리엘화의유동성 통제 및 안정화를 위해 어느 정도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음.

□ 외국 통화 송금 허용

- 캄보디아에는 아직 특별한 외환규제가 없으며, 이는 외환제도가 제 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캄보디아 투자법 제11조는 금융 시스템을 통한 외국 통화의 획득과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적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외국통화를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있음.
- 외환 송금 허용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수입대금 지불, 외국 차관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 로열티 및 관리비용 지불
 - 이익의 송금
 - 자본금의 본국 송환 등임.

(4) 특별진흥지대

□ 특별진흥지대 5곳 설치 예정

- 정부는 한 곳 이상의 특별진흥지대를 설립하여 국내외 투자를 끌어 들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음. 산업지역은 수출가공지대와 자유무역 지대를 포함하여 프놈펜, 시아누크빌, 코콩, 포이펫, 그리고 파이린 에 조성될 예정임.
- 시아누크빌에는 이미 50ha 지역이 이러한 목적으로 지정되었고, 정 당한 법 절차 내에서 민간투자가 가능하게 될 예정임. 항만시설 또 한 시아누크빌에서 이루어졌으며, 프놈펜에는 보세창고 시설이 개 발되고 있음.

- 그러나 토지등록, 정단 관련 도산 관련 법적제도가 충분치 않아 법률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그림 11> 캄보디아 특별진흥지대



<참 고 6> 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여건, 갈수록 호전

□ 수출자유뮤역지대 설치

- 캄보디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수출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의 공동의장직을 맡고 있는 라나리드 국회의장은 최근 발표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태국 국경의 코콩(Koh Kong), 파이린(Pailin), 포이펫(Poipet) 및 시아누크 빌 지역 이외에 베트남 국경지역인 스베이 리엥(Svay Rieng)과 새로운 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캄퐁치낭(Kampong Chhnang)에도 수출자유무역지대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캄보디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외국인 투자 유치법을 도입,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시설을 갖춘 수출자유무역지대가 전무해 봉제업을 제외한 여타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진출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임.
- 이같은 문제점 인식에서 출발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및 여타 제조업 분야의 투자유치를 통한 산업화를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태국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자유무역지대 설치 타당성을 조사하여 온 바 있으며, 이중 코콩 수출자유무역지대는 금년 말부터 총 330 ha에 걸쳐 공사가 시작될 예정임.

□ 외국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고려

- 캄보디아 정부는 수출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세금혜택을 제공함은 물론 법으로 금지된 외국인의 토지소유에 대해서도 예외조항을 두는 등 기존의 외국

인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 부여한 혜택 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수출자유무역지대 확장으로 본격적인 산업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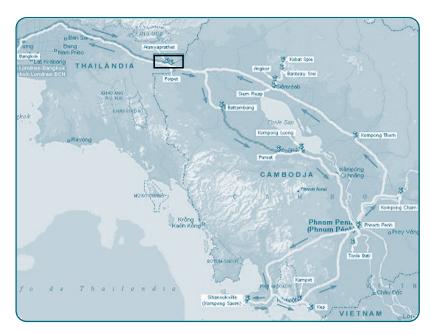
- 캄보디아가 주 타겟으로 삼고 있었던 태국 국경지역 이외에 베트남 국경지역으로 까지 수출자유무역지대를 확장하고 있는 배경에는 우선 베트남에 진출해 있거나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외국인 기업 중 일부를 캄보디아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형의 혜택만을 부여함으로써 지난 1994년 외국인 투자법이 시행된 이후 캄보디아로 진출한 외국기업은 대부분이 저렴한 인건비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단순 임가공분야이어서 캄보디아의 산업화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수출자유무역지대 설치는 캄보디아의 본격적인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초석이 될 것으로 보임.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C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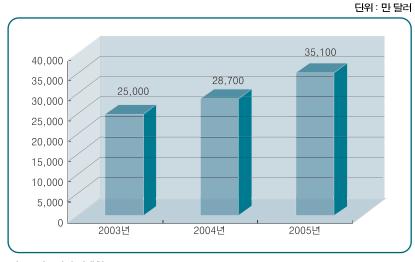
□ 무역중심도시 포이펫

- 인구 7만 5,000여명의 포이펫(Poipet)은 태국과의 육로 무역 중 70%를 차지하는 무역중심 도시임.
- 포이펫은 태국의 방콕에서 동남쪽으로 300km,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북서쪽으로 430km 떨어져 있는 도시로 태국과 캄보디아의 수도를 잇는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2004년 들어 무역규모와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림 12> 캄보디아 · 태국 접경지역 포이펫



<그림 13> 포이펫 무역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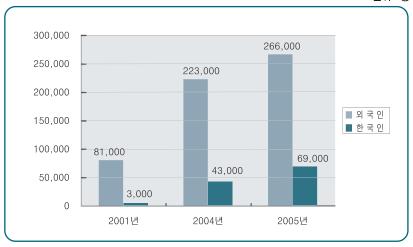


자료 : 캄보디아 관세청

<그림 14>

포이펫 방문 외국인 및 한국인

단위 : 명



자료 : 포이펫 이민국

- 포이펫 방문인구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5년에는 한국인 방문객 수가 7만명에 육박함.

마. 외국인 직접투자 유관기관

□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정부기관

- 상무부
 - Address: #20 A&B, Norodom Blvd., Phnom Penh
 - Tel: (855-23) 725 585
 - Fax: (855-23) 426 396
 - E-mail:nimul_cham@yahoo.com
 - Homepage: www.moc.go.kh

- 재정경제부

- Address: #92, Wat Phnom, Phnom Penh
- Tel: (855-23) 722-263
- Fax: (855-23) 430-168, 023-427-798
- E-mail:efi@camnet.com.kh
- Homepage: www.mef.gov.kh

- 관세청

- Address: Norodom Blvd., Phnom Penh
- Tel: (855-23) 023-214-065, 023-725-187
- Fax: (855-23)430-023,725-157
- E-mail: Kunnhem@yahoo.com

- CDC(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 Address: Government palace, Sisowath Quay, Phnom Penh
- Tel: (855-23) 981-154
- Fax: (855-23) 428-426
- E-mail:cdc.cib@online.comkh
- Homepage: www.cambodianinvestment.gov.kh

□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서비스 기관

- Camodia International Law Firm(CILF)
 - Address: #254, Monivong Blvd., Interlligent Office Center
 - Tel: (855-23) 221-843
 - Fax: (855-23) 219-077
 - E-mail:cilf@online.com.kh

- DC Law Firm
 - Address: Prea Monivong, The Interlligent
 - Office Center Building, Phnom Penh
 - Tel: (855-23) 357-778
 - Fax: (855-23) 357-77
 - E-mail:cd_law_firm@lawyer.com
- Borima Dy International Law Firm & Associates
 - Address: #38, Samdech Pan (St. 217), Phnom Penh
 - Tel: (855-23) 991-688
 - Fax: (855-23) 911-688
 - E-mail:bilfa@camintel.com, Bilfa@online.com.kh
- Price Water House Coopers
 - Address: #124, Norodom Blvd., Phnom Penh
 - Tel: (855-23) 218-086
 - Fax: (855-23) 211-594
 - E-mail: jean.loi@kh.pwc.com, senaka.Fernando@kh.pwc.com
 - Homepage: www.pwcglobal.com
 - Fides Services (Cambodia) Ltd.
 - Address: #60C, Mao Tse Toung Blvd., Phnom Penh
 - Tel: (855-23) 217-307
 - Fax: (855-23) 217-308
 - E-mail:fides@fides.com.kh
 - Homepage: www.fides.com

- Vanda Institute of Accounting

• Address: #216-218, Mao Tse Toung (St. 245), Phnom Penh

• Tel: 023-213-563

• Fax: 023-213-562

• E-mail:vanda@camnet.com.kh

• Homepage: www.vanda.edu.kh

<참고 7> 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 장려 및 제한분야

□ 외국인 투자 장려분야

- 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 정책은 민감한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 외국인에 개방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이는 열악한 국내자본 구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위함이라고 볼 수 있음.
- 캄보디아의 개방 지향적인 경제와 풍부한 천연자원 및 저렴한 인건비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캄보디아의 투자여건을 인근국가와 비교할 때에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캄보디아의 시장개방 정책이며, 캄 보디아는 메콩강 지역에서 태국을 제외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첫 번째 국가임. 캄보디아는 메콩강 지역 의 국가들 중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가장 많이 개방되어 있음.
- 캄보디아 정부가 정책으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분야 는 아래와 같음.

- 농업과 농가공 산업
- 환경보호 산업
- 수출지향 산업
- 고용창출 산업
- 특별진흥지대에의 투자(SPZs)
- 사회간접자본과 에너지 산업
- 하이테크놀로지 산업
- 농촌지역 개발 산업
- 관광 및 관련 산업

□ 외국인 투자 제한분야

-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는 일부 에 국한되며, 기타 제한분야는 1999년 8월 30일 제정된 외국 인 투자법 시행령 No. 80에 구체적인 분야를 명시하는 Negative List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

관 련 분 야	비고	
- 문화예술품 제조및 가공	사전에 관련부처의 승인을 요함	
- 국내산 원지재를 이용하는 합핀생산 등 목재 관련 산업	신규라이센스 발행 중단	
- 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사전에 보건 복지부 및 관련부처의	
는 화학물질의 생산	승인을 요함	
- 향정신성 물질의 제조	보건보지부의 승인을 요함	
- 마약제조및 가공	금지	
- 무기및 탄약제조	금지	

– 외국인 투자 제한분야

관 련 분 야	비고	
- 담배 제조	100% 수출용에 한함	
- 알코올 음료제조	사전에 산업자원부 및 보건복지부	
글꼬르 ద꾜세고	의 승인을 요함	
- 영화제작	사전에 관련부처의 승인을 요함	
- 보석채굴	국내기업과 합작에 한함	
- 타일 및 벽돌생산		
- 정미소		
- 목재 및 석 조각		
- 실크 제조		

– 외국기업에 일정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 서비스 분야

관 련 분 야	비고	
- 출 판 -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	사전에 정보부 및 문회예술부의 승인을 요함	
- 영상녹음물 출판		
- 인쇄업		
- 출판 관련 서비스업	외국인 지분 최대 49%까지 제한	
- 라디오 및 TV관련업		

자료: www.kotra.or.kr

<참고8> 파트너 선정 시 유의사항

□ 실제 분쟁시 해결이 어려우므로, 파트너 선정시 주의

- 외국인 투자자와 캄보디아측 파트너간의 분쟁은 기업 활동에 관한 법규가 미비하여 당사자간 합의 또는 제3자의 중재에 의 해 해결토록 되어 있음
 - 실제 분쟁시 해결 관행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자의적 으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파트너 선정을 특히 주의해야 함

□ 100%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적절한 파트너 물색은 규정이나 투자법 등 명문화 된 법에 의지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투자 기업가의 경험과 통찰 력, 직감이 요구되는 고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함
 - 대다수의 외국 투자기업은 현지파트너의 수준이 낮기 때문 에 캄보디아 기업 특히 국영기업과의 합작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100% 단독투자방식을 선호

V 우리나라의 진출 확대 방안

1. 진출 현황 및 애로점

가. 우리기업의 진출현황

□ 우리나라의 무역흑자 지속

- 교역은 1997년 양국수교 이후 본격화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2003년에는 SARS 영향으로 소폭 하락),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흑자 시현

<표 9> 연도별 대 캄보디아 수출입 실적

			근지 : 전 글이
연 도	수 출	수 입	교역 규모
1999	80,183	5,133	85,316
2000	95,920	2,311	98,231
2001	1 01 ,5 39	7,109	216,769
2002	1 15,230	3,026	1 18,256
2003	1 05 ,5 63	4,200	109,763
2004	1 26,3 21	6,949	133,270
2005	1 44 ,2 80	5,962	150,242

자료: 무역협회, www.kita.net

다위 : 천 달러

- 주요수출품목은 섬유류·자전거·중고자동차 등이며, 수입품목은 천연고무를 비롯한 농·임·수산물 등 1차 산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우리나라의 해외직접 투자는 섬유산업에 집중

- 해외직접투자는 부동산업을 제외한 업종 중에서 섬유 · 의류산업 등에 집중되어 있고, 2006년 6월말 총투자기준 122건, 161백만 달 러를 기록하고 있음.

<표 10> 업종별 우리나라 대 캄보디아 직접투자 현황

(1968~2006년 누계)

	(1968~2006년 누계)		
업 종	금 액	건 수	
부 동 산 업	47,053	3	
제 조 업	39,359	44	
광 업	32,171	2	
서 비 스 업	13,582	25	
건 설 업	10,733	1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班 11> 주요 국가별 직접투자현황

다위 : 백만 달러

				단위 : 적단 달니
순 위	국 가		투자액 (1994~2004년 누계)	점유율(%)
1	말 레 C	비사아	1,892	40.6
2	대	만	516	11.1
3	미	국	437	9.4
4	중	국	406	8.7
5	한	국	295	6.3

자료: Cambodian Investment Board

단위: 천 달러

- 캄보디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서 우리나라는 다섯 번째의 투자 국이며,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 캄보디아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 세임.

□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현황

<표 12> 대 캄보디아 금융지원 현황

(2006년 11월 초 현재)

구 분	승 인 액	집 행 액	여 신 잔 액
대 출			
수출 자금 대출	100	1.00	4.00
(무역어음재할인)	192	1 92	192
해 외 투 자 금	4,800	4,800	4,800
보 증			
이 행성 보증	2,655	2,655	2,655
합 계	7,647	7,647	7,64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참 고 9> 캄보디아 비즈니스 에티켓

□ 전통적인 인사법 사용

- 캄보디아 거래선을 만날 때 가급적 전통적인 인사법(전통적 인 인사법은 불교식으로 양손을 합장하여 가슴 쪽으로 당겨 모은채로 머리를 숙이는 방식)으로 답례하면 보다 부드러운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현재는 서구문물의 영향으로 남성 사이에서는 악수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으나 그래도 전통적인 합장인사를 하면 아주 좋아하며, 대부분의 여성들은 전통적인 인사방법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음.

□ 한국 특산물 준비

- 한국산 담배나 인삼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 초대를 받거나 사무실로 방문할 경우 소량을 준비하여 가는 것도 좋은 인상을 심어 줄수 있음
- 시간관념이 한국인들과 다소 다른 관계로, 조금은 인내심을 갖고 대할 필요가 있으며 식사 초대 시 가끔씩 야생동물 요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은 시식을 해보든지 아니면 정중하게 사양해도 무방함.

자료 :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 주요 산업별 진출 상황

- 1993년 중고 오토바이 수출을 시작으로, 초기에는 광산·식당·호텔·관광분야를 중심으로 진출이 이루어졌으며, 1996년부터 다수의 봉제 공장이 진출함으로써 대 캄보디아 투자가 본격화되었음.
- 우리기업의 진출은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점이 특징
 이며 최근에는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 이외에도 농업 · 광업 등에
 대한 투자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SK·동화기업 등이 임업 분야에 진출한 바 있으나 벌목금지 조치로 철수하였으며, 현대는 시멘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인프라 구축시점을 관망하고 있는 상황임.
- GS칼텍스는 A 해상광구⁹⁾(미 Chervron사 55%, 일 미쓰이사 30% 지분 참여)에 15%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임.

□ 우리기업의 주요 진출 분야

- 제 조 업: 봉제, 모자, PVC파이프, 플라스틱백 등

- 농 업:타피오카 재배, 양돈 등

- 무 역 업:차량, 중장비, 전선 직물 등

- 건 설 업:아파트 건설, 토목 등

- 서비스업: 은행, 미용실, 통관, 자동차 정비, 컨설팅 등

- 관광산업: 호텔, 식당, 여행사, 골프연습장, 가라오케, 극장 등

^{9) 5}개의 탐사정에서 최소 1억 배릴 이상으로 평가되는 원유층을 발견하였으며, 2008 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설 계획임.

나 진출 장애요인

□ 정치적 불안

- 2004년 7월 연립 정부의 성립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오던 내정 혼란이 점차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여야간 대립과 오랜 정쟁으로 인한 후유증이 산재해 있음.
- 전범재판 결과에 따라 다수 지역에 잔존해 있는 크메르루즈 세력들 이 무력 반발을 일으킬 수 있고, 반공산주의 그룹인 캄보디아 자유 전선 (CFF)의 활동이 분란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음.

□ 경제 제도의 취약성

-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정부 관료들의 이 해도가 부족하여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존하기 보다는 각종 인적 관 계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음.
- 관료들의 부정이 만연하고 부당한 뇌물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통관시 세관·경찰·검사기관 등의 중복적인 개입과 각종 행정서 류의 발급비용이 과다하여 투자비용이 증가함.

□ 인프라 및 인적 · 물적 자원 부족

- 크레르루즈 시대에 상당수 지식인들과 기술자들이 숙청 당하거나 해외로 도피함에 따라 첨단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전자산업 분야 등에서의 고급노동력 확보가 곤란한 상황임.

- 도로 · 운송 등 교통 인프라가 열악하고 운송에 어려움이 있어 캄보디아 국내 생산이 가능한 원자재도 수입하는 등 필수 원자재 확보가 극히 곤란함.
- 전력난으로 인해 대부분의 진출 기업들이 자가 발전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많은 용수를 필요로 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이용해야 하므로 지하수 사정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 사항임.

□ 내수상품(공산품)의 밀수 성행

- 국경 무역시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못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태국과 베트남산 저가품의 유입이 자유롭고 밀수도 성행하고 있음.
- 시중 도소매의 편차가 커 적정가격(손익분기점) 산정이 매우 어렵고, 장기간에 걸친 경쟁업체간 출혈 판매가 일반화 되어 있어 가격경쟁력만으로는 생존가능성이 희박함.

□ 한국 상품은 고가품이라는 인식

- 한국산을 찾는 바이어들은 주로 중고품 또는 재고상품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신제품에 대해서도 태국산 혹은 베트남산 수준의 낮은 가격을 요구함.
- 한국산 제품 구입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한국 상품을 중국이나 싱가 포르 등으로부터 재수입하는 경우도 빈번함.
- 원칙적으로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과 전기 사용 료를 내국인은 650리엘/kWh, 외국인은 800리엘/kWh로 차등 부과 하고 있는 등 내국기업과의 차별도 잔존함.

<참 고 10> 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환경에 대한 SWOT 분석

Strengths

- 아세안 시장에 대한 접근. 유럽연합 등 다른 선진국 진입 시 저개발국의 혜택 향유
- 시장친화적인 정부의 정책계획
- 관광과 문화산업 발전의 잠재력

Weaknesses

- 고급인력의 부재
- 높은 전기, 수도, 통신, 수송 이용료
- 효율적이지 못한 정부의 산업관리 능력과 부패의 만연

Opportunities

- 관광산업 분야
-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식품 분야
- 섬유산업 분야
- 사회간접자본, 교육 및 의료 관련 서비스 분야

☐ Threats

- HIV/AIDS의 확산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근무환경

자료: United Nation, An Investment Guide to Cambodia, 2003

2. 진출 확대방안

가. 진출 유망 분야

□ 농업분야

- GDP의 43%, 전체 노동력의 80%를 점유하고 있고, 인구의 85%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절대빈곤충의 75%가 농민이라는 점에서 농업분야 개발은 캄보디아 정부의 최대 관심사항임.
- 쌀농사는 전체 경작지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여 년간 경 작면적과 생산성이 향상되면 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는 등 발전가능성이 높음.

□ 농가공 분야

- 정부는 국내외 기업에 장기간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여 농산물 가 공 공장을 건설토록하고 있고, 인근지역의 농가들과의 계약을 통해 원재료를 공급토록 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음.
- 바탐방과 캄퐁스프 지역에서는 해마다 2~3회 수확이 가능한 사탕 수수를 이용, 설탕 및 알코올 생산 시설과 그 폐기물을 이용한 발 전·비료생산 설비 건설이 유망함.
- 이외에도 톤레삽 지역 주변의 황마를 이용한 황마 공장, 야자유 정 제소, 고무 가공공장, 과일제품 생산 공장 설립 등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 또한 농가와의 장기계약을 통해 비교적 싼 땅값과 인건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축산물 가공 산업에 대한 전망이 양호함.

□ 관광산업

- 캄보디아는 독특한 역사적 유물과 오염되지 않은 청정 자연경관을 그대로 간직한 데다 아시아 관광대국인 태국과 인접한 요충지에 위치한 관계로 관광산업 유치에 상당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메콩강 유역, 톤레삽 호그, 시아투크빌, 킴폿 지역 등은 깨끗한 산수를 지닌 대표적인 자연관광지임.
- 프놈펜은 프랑스 영향을 받은 유럽풍 전경을 지니고 있으며, 왕궁, 국립박물관 등 역사적 유물 뿐 아니라 강과 산으로 둘러싸여 경관도 수려한 강점이 있음.
- 특히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며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앙코르 와트는 연평균 50만명 이상이 찾는 세계 최대 관광지 중의 하나로 호텔 및 여타 위락시설을 총괄하는 거대 관광지로의 성장이 유력함.
- 정부는 오랜 내전으로 인해 파괴된 호텔, 레스토랑, 국제 수준의 여타 시설물 건설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국제적 기업들의 투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나 진출전략

□ 인프라 구축 및 건설 참여

- 수십 년간 내전과 정치적 분쟁으로 각종 기반시설이 파괴된 캄보디 아에서 기초 인프라 구축 분야는 매우 전도유망한 사업으로 각광받 고 있음.
- 건설분야는 최근 연간 80%를 웃도는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 나, 아직 도로 · 항구 · 관개시설 · 댐 · 호텔 등은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은 실정임.
- 또한, 메콩강 유역 개발을 위한 인근국가(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들과 2002년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총 20억 달러의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가 추진 중임.
- 전력 공급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나, 수용발전 가능 전력은 총 43개 지역에 걸쳐 8.000Mw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크라띠에강 의 삼보지역은 최고 3.300Mw의 발전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평가 받고 있음.
- 재원부족 등 현지여건을 감안, 국제 금융기구의 차관이 지원되는 도 로와 전력부문 건설에 우선 참여함이 바람직함.
- 특히, 최근 정부가 도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우리 업체의 단독 진출 혹은 현지 업체와의 합작 공사가 유력함.

□ 자원개발 사업 참여 확대

- 개발 유망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측 독자 탐사를 통해 개발 시 기득 권을 선점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우선 고려 하면서 지분 매입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상 유전·가스 유전 개발 및 정유·가스분리 플랜트, 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 공단 건설 프로젝트 등의 수주 능력 확충

□ 관광산업 진출 확대

-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 된 앙코르 와트는 연간 수십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이 나, 숙박이나 위락시설 등이 아직 부족한 상황임.
- 아시아나 항공의 시암립 직항로 개설로 한국·일본 등지로부터의 관광객 유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호텔·식당·레저시설 등 의 투자가 유망함.

□ 한국인 전용공단 설치 추진

- 캄보디아 정부는 일본과 공동으로 특별경제구역(SEZ) 지정을 위한 조사 작업을 시행중이며 3개 후보지를 선정 · 발표할 예정임.
- 특별경제구역 내에 한국인 전용공단이 설치될 경우, 인프라 부족· 통관 지연 등 투자 장애요인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어 우리 기업 들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부 록



(부록 1) 캄보디아 투자법

제 1장 총칙

제1조:이 법은 캄보디아인 혹인 캄보디아 왕국 내의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투자사업에 대해 적용된다.

제2조: 투자자는 자연인 혹은 법인이 될 수 있다.

제 2 장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제3조: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는 재건, 개발, 투자활동에 관련된 단독적인 일괄처리 서비스 기관이다.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는 모든 재건과 개발 그리고 투자사업 활동에 대해 평가와 결정을 내리는 왕립정부의 본부이다.

제4조: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는 다음의 두 집행기관으로 구성된다.

- 1. 캄보디아 재건과 개발국
- 2. 캄보디아 투자국

제5조: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은 부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투자 절차

제6조: 투자자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 그 평가와 승인을 위해 투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는 투자자가 완전한 투자신청서를 갖추어 제출한 날부터 최고 45일 이내에 투자자 혹은 신청자에게 그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다. 앞서 언급한 기간 내에 투자자의 신청서 에 대한 평가와 답변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는 정부관리는 처벌을 받는다.

제 4 장 투자 보장

제8조 : 투자자는 캄보디아 왕국의 헌법에 규저된 바와 같이 토지소유를 제외하고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제9조: 왕립정부는 캄보디아 왕국의 투자자의 개인 재산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국유화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

제10조: 왕립정부는 정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투자자의 용역이나 혹은 생산품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다.

제11조: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일반 국민에게 공포한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서 왕립정부는 투자자가 은행제도를 통해서 외화를 매입 하고, 그들의 투자에 관련해서 발생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것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다.

- (1) 수입대금과 국제적 대부금의 원금과 이자의 지불금
- (2) 특허권 사용료와 관리비
- (3) 과실송금
- (4) 제8장에 규정된 투자자본의 회수송금

제 5 장 투자 장려제도

제12조: 왕립정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 투자를 고무하기 위해 서 투자 장려제를 실시한다.

- (1) 첨단의 고급기술 산업
- (2) 고용창출산업
- (3) 수출지 향산업
- (4) 관광산업
- (5) 농업과 변형산업
- (6) 기간산업과 전력사업
- (7) 지역 및 농촌개발 사업
- (8) 환경보호산업
- (9) 법에 의해 설립될 '특수 진흥 지역 SPZ'에서의 투자사업

제13조 투자장려책으로서 관세와 조세에 대해서 일부 혹은 전부 면제 가 포함된다.

제14조: 투자장려책은 다음과 같다.

(1) 9%의 법인세 단, 독립법에 규정되는 자연자원, 목재, 석유,

광물, 금과 보석의 탐사와 개발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 (2) 투자사업의 성격과 정부가 우선적으로 선저한 분야에 따라 8년까지 법인세가 면제되는데 이 사항은 부칙에서 언급된다. 인세 면제는 투자사업이 최초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연도부터 시작되어 발효된다.
- (3) 투자에 대한 배당금 혹은 이익금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으며 이러한 자금은 외국으로 송금될 수도 있고 국내에 사용될 수 있다.
- (4) 다음 항목에 의해 사용되는 원자재와 부품, 중간재, 장비, 생산시설재, 건설자재에 대해서 수입관세가 100% 면제된다.
 - a. 생산의 최소 80%를 수출하는 수출지향의 프로젝트
 - b. 개발 위원회가 발표한 개발우선 항목에 열거된 것으로 '특별촉진지역SPZ'에 위치한 프로젝트.
 - c. 관광산업
 - d. 노동집약산업, 변형가공산업, 농업
 - e. 기간산업과 전력산업

위에서 언급된 관세와 조세의 100% 면제는 투자프로젝트의 승인 조건 혹은 요구사항에 따라 효력을 갖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 프로젝트 위(4) 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총 생산의최소 80%를 수출용으로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4)항의 b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특별촉진지역에 입주되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위의 (4)항의 a와 b에서 언급된 투자프로젝트와는 별도로 관세와 조세의 100% 면제는 기업, 공장, 건물 등의 건설기간과 사업경영의 최초 연도에만 적용된다.

- (5) 있다면, 수출세의 100% 면제
- (6) 다음과 같은 인사가 외국인인 경우 캄보디아 왕국으로 초 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 관리자와 전문가
 - 기술자
 - 숙력공
 - 이민법과 노동법에 순응하여 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인정한 위 사람들의 배우자와 부양가족

제15조: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에 의해 부여된 승인과 장려책은 제3자 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 6 장 토지 소유와 사유

제16조 : 토지의 소유와 사용에 관련하여 헌법 및 관련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 (1) 투자활동의 촉진을 위한 토지소유는 캄보디아 시민권을 가 지고 있는 자연인 혹은 법인만이 가능하다. 캄보디아 시민 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캄보디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 혹은 법인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주의 51% 이상 을 갖고 있는 법인이다.
- (2) 토지의 사용은 7()년까지 장기입대를 포함하여 투자자에게 허용되며 요구시 갱신할 수 있다. 법에 의해 허용되는 바와 같이 토지 사용권은 토지 위에 설치되는 개인 재산과 부동 산의 소유권을 포함한다.

제 7 장 고용제도

- 제17조: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노동법과 이민법에 준거하여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다.
- 제18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자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 자를 고용할 수 있다.
 - (1) 캄보디아의 인구 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나 전문가를 찾지 못하여 외국에서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에 피고용인의 여 권사본, 자격증 혹은 학위 그리고 경력서를 포함하는 관련 서류를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투자자는 캄보디아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계속적인 훈련을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 (3) 시간이 경과하면 캄보디아 직원은 상위 직급으로 승진된다.
- 제19조: 외국인 피고용자는 캄보디아에서 받은 급료와 월급을 관계 세금을 납부한 후 은행제도를 통해서 얻어진 외화로 외국에 송금할 수 있다.

제 8 장 분쟁과 해결

- 제20조: 이 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캄보디아에 설립된 투자회사의 캄보디아인과 외국인간의 분쟁은 분쟁당사간의 평화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한다. 양 당사자간에 2개월 이내에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 분쟁은 그 해결책을 위해서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해 아리와 같이 처리될 수 있다.
 - 그 견해를 제시해 주는 개발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다.
 - 캄보디아 왕국의 법원에 이 문제를 회부한다.
 -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양 당사자에 의해 상호 동의한 국제 법에 이 문제를 제기한다.
- 제21조: 투자회사가 캄보디아 왕국에서 그 사업 활동을 종결하려 할 경우 그 회사는 그 결정의 사유를 진술한 편지를 동기우편이나혹은 인편을 통해서 개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편지는 반드시 투자가가 위임한 이사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 제22조: 사법적 절차없이 회사를 폐업할 경우 투자자는 관련 상법에 따라 회사를 공식적으로 해산하기 전에 재정경제부로부터 회사의 잠재적인 채권자와 탄원자의 요구주장을 적절히 해결했다는 중빙서를 갖추어 개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 일단 투자자가 사법적인 절차로 자신의 회사를 공식적으로 해산할 것을 허락받으면 투자자는 잔여 재산을 외국으로 이동시키거나 혹은 캄보디아 왕국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

나 해산하는 회사가 면세로 수입된 기계와 장비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사용하였을 경우에 그 회사는 그 기계와 장비에 적 용되는 관련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최종규정

제24조: 캄보디아국 (State of Cambodia)의 종전 투자법과 시행규칙 아래 숭인된 투자는 이 법 아래 구정된 바와 같이 동일한 특혜 의 의무를 갖는다.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제25조: 투자회사가 개발위원회가 규정한 조건들을 위반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개발위원회는 그 회사에 부여한 권리와 특혜의일부 혹은 전부를 철회할 권리를 갖는다.

제26조: 이 법은 즉시 공포된다.

(부록표) 투자법 개정(안)

- 당초 개혁안 골자
 - 수출기업의 원부자재 및 설비 수입에 수입관세 부과
 - Tax Holiday 기간 조정
 - CDC 승인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9%에서 20%로 일반화
 - 과실송금 및 재투자에 대한 과세
 - 최소세 재검토
-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 진출 외국 기업들의 애로를 인프라 낙후 및 고가 유틸리티에 의한 코스트 부담, 행정의 불확실성 및 관료주의, 뇌물과 밀수, 상법 부재 및 회계제도의 투명성 부족 등으로 정리하고 이들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한편 시급히 해결이요구되고 있었던 통신요금 인하, 도로 정비, 전력 확충 등 부문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을 달성함.
- 투자법 개정은 투자 유치와 세수증대의 균형적 고려, 신중하고도 공정한 인센티브 재검토, 셋째, 민간 투자자들의 의견 적극 수령 등 기본 원칙에 의거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음.

- 그러나 동 축소안은 캄보디아의 현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시기상 조라는 의류공장 등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봉착하여 그간 추진이 보 류되어 왔음.
- 캄보디아 정부의 조치 방향
 - 농업 및 농가공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현재 Rural Development Bank에서 상업은행과 전문은행간의 협조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 연구
 - 인프라 개선을 위한 원조국 및 ADB등 국제기구와의 협조 방안 모색
 - 농업 관련 기자재, 비료, 살충제, 종자 등 수입에 대해 면세 조치
 - 원부자재 수입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를 면제하고, 매 6개월마다 원부자재의 적법한 사용여부조사 등

자료: www.kotra.or.kr

〈부록Ⅲ〉 캄보디아 외환법

- Referring to the 1993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Cambodia;
- Referring to Reach Kret His Royal Highness Norodom Sihanouk Varmann, King of the Kingdom of Cambodia of November 1, 1993 on the formation of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 Referring to Kram o2/NS/94 of July 20, 1994 promulgating the Law on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the Council of Ministers;
- Referring to Reach Kret No. NS/RKT/1094/90 of October 31, 1994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Composition of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 Referring to Reach Kret No. CS/RKT/0897/147 of August 7, 1997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Composition of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 Referring to Kram No. NS/RKM/o196/27 of January 26, 1996 promulgating the Law on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the National Bank of Cambodia;
- Referring to Reach Kret of September 3, 1993 on the appointment of H.E. Thor Peng Leath as the Governor of the National Bank of Cambodia;
- Referring to the Financial Law of December 28, 1993;
- Pursuant to the request by the First Prime Minister and the Second Prime Minister and the Governor of the National Bank of Cambodia.

HEREBY PROMULGATE

- The Law on Foreign Exchange as ratifi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August 5, 1997 during the eight session of the first legislature and whose entire meaning are as follow:

Law on Foreign Exchange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 **Adicle 1: Any foreign exchange operations and, in general, any operations carried out between residents and nonresidents are subject to the present law when they relate to:
 - payments for commercial transactions;
 - transfer; or
 - capital flows, including investment.
- Article 2: For the enforcement of this law,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foreign exchange:
 - payment instruments or securities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 raw gold, raw precious metals, uncut precious stones.
- \mathcal{A} ticle \mathcal{S} :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residents:
 - individual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who have had their main professional activity or their main residence in the Kingdom of Cambodia for a period of and over one hundred and eighty two days (182 days), with the exception of foreign civil servants on diplomatic or similar assignments;

- legal entities incorporated under local law and branches of legal entities incorporated under foreign law that are established in the Kingdom of Cambodia;
- any Cambodian civil servants on foreign assignments, regardless of the length of their stay.

**Adicle 1: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nonresidents:

- individuals of Cambodian nationality, who have had their main professional activity or their main residence abroad for a period of and over one hundred and eighty two days (82 days);
- foreign individuals, who have had their main professional activity or their main residence in the Kingdom of Cambodia for less than one hundred and eighty two days (182 days);
- legal entities, incorporated under local law, established abroad and overseas branches of legal entities incorporated under local law:
- foreign civil servants on diplomatic or similar assignments in the Kingdom of Cambodia.

Chapter 2: Bank Intermediation

Article 5:

1. There shall be no restrictions on foreign exchange operations through book entry including purchases and sales of foreign exchange o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transfers, all kinds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and capital flows in foreign or domestic currency, between Cambodia and the rest of the world or between residents and nonresidents. However, such operations shall be undertaken solely through authorized intermediaries.

- 2. Only banks permanently established in the Kingdom of Cambodia shall be considered as authorized intermediaries.
- 3. Authorized intermediaries shall be required, under conditions established by regulations, to provide the Central Bank on a regular basis with periodic statements, by type of transfers or settlement and of outflows and inflows of capital carried out between the Kingdom of Cambodia and the rest of the world, according to the time set by the Central Bank.
- 4. Any export of cash in foreign currency by authorized intermediaries shall be subject to prior declaration to the Central Bank.
- 5. The manual money changers who have fixed or moving counter may exercise their exchange transaction with the prior authorization of the Central Bank.
- **Adicle 6 : In case of foreign exchange crisis, the Central Bank may issue regulations to be implemented for a maximum period of 3 months, imposing certain temporary restrictions on the activity of authorized intermediaries, particularly on the transactions stated in Article 5 of the present law, or their foreign exchange position, or any loans in domestic currency extended to nonresidents. In case of having to prolong the scheme, the Central Bank together with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submit a request to the Head of the Royal Government for approval.
- Adicle 7: Residents may hold foreign currencies freely, both in form and location of such holdings inside the country. Nevertheless, in case of foreign exchange crisis, the Central Bank may issue regulations to be implemented for a maximum period of 3 months, suspending temporally the enforcement of this provisions. In case of having to prolong the scheme, the Central Bank together with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submit a request to the Head of the Royal Government for approval.

Chapter 3: Current Operations

Article δ : Exporters or importers of goods and services shall make payments for their commercial transactions with the rest of the world through authorized intermediaries.

Adicle 9: Authorized intermediaries may be required by the Central Bank to submit proof of payment for imports by banker's order in support of their applications to purchase foreign exchange, and later be also required to provide various administrative evidence confirming the entry of goods into the country.

Article 10: Since the collection is made, the proceeds from export of goods or services shall be credited to the exporter's account with the domiciled bank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of the present law.

Adicle 11: Counterpart funds in domestic currency from the local marketing of products imported on the basis of external borrowings or grants must be credited to the National Treasury's account with the Central Bank,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to be defined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National Treasury and the Central Bank.

Article 12: The import or export of raw gold, uncut precious stones or other raw precious metals shall be free, in accordance with point 1 of Article 5 of the present law, however, shall be subject to prior declaration to the Central Bank if the value of each transaction equals or exceeds ten thousand US dollars (USD 10,000).

Adicle 13: The export or import of the means of payment equaling or exceeding ten thousand US dollars (USD 10,000) in foreign exchange or the equivalent amount in domestic currency by a traveler shall be declared to the customs officers at border crossings of the Kingdom of Cambodia.

The export of cash in excess of the limit set by the regulation of the Central Bank shall be subject to prior examination by the Central Bank.

The Customs House shall transmit a copy of each such declaration to the Central Bank on a monthly basis.

Chapter 4: Investments Capital Flows

- Adicle 11: The capital flow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hall be governed by the Investment Law of the Kingdom of Cambodia.
- Adicle 15: In so far as liquidation of foreign investment takes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Investment Law of the Kingdom of Cambodia, proceeds from said liquidation may be transferred freely.
- Adicle 16: Investment made abroad by resident for an amount equaling or exceeding one hundred thousand US dollars (USD 100,000) shall be subject to prior declaration to the Central Bank.
- Adicle 17: Transfers relating to investment or liquidation of investment shall be made through authorized intermediaries as stated in Article 5 of the present law.

Subsequently, the authorized intermediaries shall report to the Central Bank the amount of each transfer equaling or exceeding one hundred thousand US dollars (USD 100,000).

Chapter 5: Other Capital Flows

Adicle 18: Loans and borrowings, including trade credits may be freely contracted between residents and nonresidents, provided that the loans disbursements and repayments thereof are made through authorized intermediary.

Article 19: The capital flows resulted from those operations (settlements of import and export of goods or services, transfers, investment, loans and borrowings) shall include in the bank periodic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as stated in point 3 of Article 5 of the present law. Such capital flows shall be classified by category of each operation and the professional secrecy shall be respected.

Chapter 6: Penalties

Adicle 20: Authorized intermediaries shall be responsible, with caution, for ensuring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set forth in the present law or in regulations of the Central Bank concerning the operations undertaken by themselves or placed under their control.

Any authorized intermediary who fails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above paragraph shall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laws.

- Adicle 21: Any person who violates points 3, 4 or 5 of Article 5 or violates Article 17 of the present law shall be liable for imprisonment from one year to five years and for a fine from one million Riels (1,000,000) to ten million Riels (10,000,000), or any one of these two punishments.
- Adicle 22: Any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1 or paragraph 1 of Article 13 of the present law shall be liable for a fine of ten per cent (10%) of the amount involved.
- Article 23: Any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2 or Article 16 of the present law shall be liable for a fine of twenty per cent (20%) of the amount involved.
- Adicle 21: Any person who violates paragraph 2 of Article 13 of the present law shall be liable for a fine from one million Riels (1,000,000) to ten million Riels (10.000.000). Equipments used in the perpetration of the violation shall be confiscated and retained as state property.
- Adicle 25: Any person who violates point 1 of Article 5 or Article 8 or Article 18 of the present law shall be liable for a fine of fifty per cent (50%) of the amount involved.

Chapter 7 : Final Provisions

Adicle 26: All provisions contrary to this law are hereby repealed.

〈부록 Ⅳ〉 **캄보디아 제품 및 용역에 대한 품질관리법**

- Referring to the 1993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Cambodia;
- Referring to Reach Kram No. NS/RKM/0399/01 of March 8, 1999 on the Amendment of the Articles 11, 12, 13, 18, 22, 24, 28, 30, 34, 51, 78, 90, 91, and 93 and Articles of Chapters VIII to XIV of the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Cambodia,
- Referring to Reach Kret NS/RKT/1198/72 of November 30, 1998 on the formation of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 Referring to Reach Kram o2/NS/94 of July 20, 1994 promulgating the Law on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the Council of Ministers;
- Referring to Reach Kram No. NS/RKM/0196/16 of January 24, 1996 promulgating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of Ministry of Commerce;
- Pursuant to the Proposal of the Prime Minister and the Minister of Commerce.

HEREBY PROMULGATE

-The Law on the Management of Quality and Safety of Products and Services as ratifi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29 May 2000 at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second legislature and as ratified by the Senate as to its entire form and legality on 02 June 2000 at the second plenary session of the first legislature and whose meaning are as follow:

Law on the Management of Quality and Safety of Products and Services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The scope of this law shall govern the following:

- all commercial enterprises;
- all manufacturers for commercial ends;
- importers, exporters, and merchants;
- service providers of products and goods;
- advertisers of products, goods and services; and
- civic associations and non governmental agencies engaged in manufacturing, commerce, or humanitarian relief.

Adicle 2: "Production/manufacturing" within the meaning of this law shall be defined as including the following: animal husbandry, dairy production, agricultural crop harvesting, fruit collection, fisheries, animal slaughtering, and the production, processing, and packaging of products together with stocking during production and the first pre-commercialization services.

"Commercialization" within the meaning of this law shall be defined as including the following:

all stocking operations, transport, custody for purpose of trade, sale display, and sales of products and goods; all gratuitous gifts of all products including importation and exportation as well as sales, provisions of services or the provisions of gratuitous services.

CHAPTER 2 : CONSUMERS' RIGHTS AND ECONOMIC OPERATORS' OBLIGATIONS

**Adicle 3: Manufacturers and service providers shall be required to indicate on their products, goods, and services in Khmer language the ingredients, composition, users' guidelines, manufacturing date, and expiration date along with other requirements which guarantee the safety and health of consumers prior to their commercialization.

Manufacturers and services providers shall be liable for strictly complying with the provisions in the above mentioned paragraph.

**Manufacturers and services providers shall comply with the general requirements of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of their composition or configuration of the products, goods, or services so as to prevent confusion by consumers or damage competition.

Manufacturers and traders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in the above mentioned paragraph for all commercialized products and services.

**Mdicle 5 : Merchants, traders and services providers responsible for products, goods, or services first placed in the stream of commerce in the Kingdom of Cambodia shall be required to ensure that their products or services are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law.

Upon request from the competent inspecting agents as stipulated under Article 27 of this law, local manufacturers, importers, and service providers responsible for the first commercialization of these products and services shall be required to provide proof of inspections or records of prior examinations.

Adicle 6: When the products, goods, or services could harm the health or safety of consumers, their manufacturing and commercialization shall be subject to a prior submission of a declaration to the competent institutions and have a prior authorization by the competent institutions following an inspection and an indication of usage guidelines in Khmer language.

Adicle 7: It shall be strictly prohibited to produce or place into the stream of commerce products, goods, or services above mentioned in Article 6 of this law when no prior disclosure has been made or no prior authorization has been issued by the competent institutions.

Adicle δ : The following acts shall be strictly prohibited:

evasion or attempt to evade inspections as stipulated under Article 6.commercialization of products, goods, or services which have not been inspected.

Adicle 9: Importation of products or goods not found in compliance with this law can be authorized provided they are only transited for re-exportation.

Adicle 10: Importation of products and goods which are of humanitarian status or non-commercialized purposes can be made provided there is a special prior authorization from the Ministry of Commerce subsequent to the approval of the Royal Government.

This special authorization can only be made provided that the products and goods concerned are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trade fair practices 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norms.

Adicle 11: Manufacturing of products not in compliance with this law shall be allowed provided they are destined for export to other countries where their sales are legal and pursuant to a specific international contractual arrangement.

Adicle 12: Presentation of proper compliance certificate, for exportation and importation, shall be required for certain products which:

may be harmful to the health or safety of consumers; may affect fair commercial practices; may preserve and enhance the quality of locally manufactured products; are required by international trade or international conventions.

The inspection of the compliance certificate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other concerned ministries.

Article 13: The Ministry of Commerce shall be responsible for entering into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agreements governing inspections of exported and imported goods, except for gas and petroleum.

CHAPTER 3 : QUALITY LABEL AND CREATION **FORMALITIES**

Adicle 14: A quality label is a separate mark to identify the quality of a product, good, or service that the manufacturers or service providers voluntarily affix to their products or services. The affixing of the quality label is done for the purpose of meeting the demand for information, to improve the manufacturer's and service provider's production performance, and to enhance the quality of domestic products.

Manufacturers and service providers shall affix the quality label in strict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stipulated under Article 59 of this law.

The modalities for determining a quality label shall be determined by a subdecree upon the proposal of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other concerned ministries.

Adicle 15: A norm within the meaning of this law shall be defined as a technical specification accessible to the public which has been established with the cooperation and consensus of all I parties concerned, based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outcomes and experiences, which is adopted by a national accrediting institution for repeated or permanent use and whose recognition is not compulsory.

A national standard system shall be established in order to provide norms and other reference documents to assist in the settlement of technical and commercial problems related to products, goods and services which can occur repeatedly in the relations between economic, scientific, technical, and social partners.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the National Standard Institute shall be defined in a sub-decree.

CHAPTER 4 : COMMERCIAL FRAUD REPRESSION

Adicle 16: Whether the party is privy or not to a contract, or a third party, it shall be prohibited to falsify or attempt to falsify products, goods, or services by any means on:

identity, type, nature, place of origin, physical or nutritional quality, contents, and quantity; past inspections, usage guidelines, non conforming usage, risks associated with usage, precautionary measures for all products, goods, and services;

manufacturing methods and date of production, use, or consumption of products.

Adicle 17: It shall be prohibited to falsify products for, or kept for, commercialization by modifying the products through treatment or tampering by adding, subtracting, or substituting any part or the whole component which is prohibited by regulations or in the absence of which by customs, or which is not in 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s.

It shall be strictly prohibited to put in the stream of commerce products which are known to be falsified.

Article 18: It shall be prohibited to put in the stream of commerce food products which are known to be contaminated or toxic or do not meet bacteriological or sanitary requirement as stipulated by regulations of the ministries concerned.

Article 19: It shall be prohibited to keep at all production, processing, and commercialization sites the following:

products known to be falsified.

food products known to be contaminated or toxic, or do not meet bacteriological or sanitary requirement as stipulated by regulations.

products and instruments used for falsifying or counterfeiting all types of goods.

tampered scales and measurement instruments used for producing or commercializing products.

Article 20: It shall be prohibited to put into the stream of commerce products and instruments used for falsifying and counterfeiting products.

Adicle 21: All forms of commercial advertising shall be prohibited if they are deceitful, misleading, false, or likely to cause confusion on the quality and safety of products, goods, and services when they pertain to the following:

product expectation;

identity, type, nature, place of origin, physical or nutritional quality, contents, quantity, manufacturing methods and date of production;

expiry date, usage guidelines and terms;

methods of sales, product availability, price;

other warranties.

Advertisers placing commercial advertisements for their own account shall be held principally accountable in their capacity as an initiator.

Advertisers are required to provide information attesting to the quality and safety and other warranties of the advertisement to the inspecting institutions as stipulated under Article 27 of this law. When the substance of the advertisement is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e above mentioned paragraphs 1 and 2, the provisions of Article 26 of this law shall be enforced.

CHAPTER 5 : ACTIONS AGAINST PRODUCTS OR SERVICES WHICH ARE LIKELY TO INDUCE GRAVE OR IMMINENT DANGERS

Adicle 22: For manufacturing, processing, and commercialization of products, goods, and services which can cause grave or imminent danger to consumers' health or safety, the competent ministries can take the following actions:

temporarily or permanently banning from sale;

temporarily or permanently closing down the manufacturing facilities; or

if necessary, withholding, confiscating, or destroying the products.

The destruction shall be carried out unless there is a prior written agreement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y and the products' owners.

Without such agreement, the owners of the confiscated products can file a complaint to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court within the period allowed.

Manufacturing, processing, commercialization facilities, and other establishments which have been temporarily or permanently closed can resume their business activities provided they have obtained authorization from the competent ministries.

Article 23: The competent ministries can issue a Prakas ordering legal and physical entities stipulated under Article 1 of this law to make the necessary modification to meet the quality and safety requirements as stipulated under Article 3 of this law.

The expenses incurred in the publication of warning or precautionary usage measures as well as the recall of defective products for modification or the partial or total refund of the purchase price shall be borne by the entities in the above mentioned paragraph.

Article 24: Similar measures to those stipulated under Articles 22 and 23 of this law can be taken to ensure safety of the provisions of services.

Adicle 25: Acts in violations of this law shall be thoroughly investigated and observ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stipulated under Articles 28 through 51 of this law. However, these provisions shall not prejudice other evidence obtained through other available means.

All safety measures shall be in compliance with, and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stipulated under Articles 52 through 58 of this law.

Article 26: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relevant ministries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repression of commercial fraud in accordance with this law. These ministries shall establish a specialized institution to be in charge of fraud repression and inspections of exported and imported goods.

Adicle 27: The inspection agents of the Ministry of Commerce shall be authorized to carry out inspection, investigation, and offenses recording activities, or to take other measures in cooperation with other relevant ministries.

Adicle 28: Inspection agents specified under Article 27 of this law are authorized to conduct inspections, prepare official records, and audit relevant issues. Their official records shall remain valid until proven otherwise.

Individuals subject to inspections shall be required to cooperate with inspection agents so that they may carry out their tasks.

Inspection agents can request additional forces for protection and intervention.

Adicle 29: Inspection agents specified under Article 27 are authorized to enter into and inspect the premises where the manufacturing, processing, commercialization, and services provisions take place, as well as inspect means of transportations, goods, warehouses, offices, and other related premises.

If these premises are used as residences, inspection agents can only enter during working hours. Outside working hours, permission from a prosecutor and the presence of local authority shall be required.

Adicle 30: Inspection agents specified under Article 27 of this law can investigate, make a duplicate, or confiscate documents essential for their investigations.

In the event of confiscation, an official minutes shall be made immediately on the spot.

All confiscated documents shall be sealed and stamped by the inspection agents. A receipt acknowledging the confiscation and a full list of inventory shall be provided by the inspection agents to the individuals whose goods are subject to the confiscation.

Official minutes which are made not in compliance with the above provisions shall be considered invalid.

All confiscated documents shall be joined with the legal procedures as stipulated under Article 51 of this law or returned to the individuals if no charge is made against them. Official minutes for the surrender of these documents shall adhere to the same process as for confiscation.

When the confiscated documents are necessary for the functioning of the enterprise activities, the inspection agents can issue a duplicate upon request, the cost of which shall be borne by the requesting party.

Article 31: Inspection agents specified under Article 27 of this law are authorized to confiscate all evidentiary documents, or product samples as ev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ocedures to be specified under a sub-decree.

Adicle 32: Inspection agents specified under Article 27 are authorized to collect testimony from individuals who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ir investigation. Records of these testimonies shall contain the following:

- sequential number provided by the recording agent;
- date, time, and place where testimony took place;
- identity, position, and address of the testimony provider;
- identity, position, and address of the recording agent;

- useful comments of the recording agent to ensure honest reporting of information given by the testimony provider; and
- signatures of the testimony provider and the recording agent.

If the testimony provider refuses or does not know how to sign or is illiterate, mention of the said fact shall be made in the records. Official (records) minutes which are made not in compliance with the above provisions shall be considered invalid.

Adicle 33: Inspection agents specified under Article 27 of this law can conduct inspection of the products, goods, and services either by visual means, ordinary measurement instruments, or by documents verification aimed at determining the identities of the products, goods, and services, and detect their compliance with respect to their declaration, or to investigate whether or not the conditions for the manufacturing, processing, commercialization, and service provisions have been respected.

The agent shall record their inspection in their official (records) which shall comprise the following:

- sequential number provided by the recording agent;
- date, time, and place where the inspection was made;
- identity, profession, and address of the individual subject to the inspection;
- all elements which can provide details on the value of the findings;
- registration number with the institution of the recording agent; and
- signature of the recording agent.

Official (records) minutes of the inspection which are made not in compliance with the above provisions shall be considered as invalid.

Photos of observed irregularities can be attached by the inspecting agent for further consideration.

Article 34: Except for the case specified under Article 40 of this law, the taking of goods samples shall be made in at least three units.

The first sample shall be for laboratory testing, the other two samples shall be kept for use in eventual counter-tests as specified under Articles 47 through 50 of this law.

Article 35: Owner of products which have been removed for samples by the agent shall sign the minutes. He can mention in the minutes any remarks that he deems useful about the sources or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s. If the individuals do not want to sign or do not know how to sign, or are illiterate, records of the situation must be written in the minutes.

Pursuant to the requests of the product owners, the agent who removes the samples shall issue a receipt which identifies the type, quantity, and value of the product samples in the eventuality that there is a refund in the future.

Adicle 36: The modalities for the removal of product samples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petent agent that requires that all three removed samples are similar and representative of the batch of the products to be inspected.

Adicle 37: Each product sample shall be kept under seal. The seal shall be attached with a label which includes the following:

> - designation of the goods which are kept for sale, place for sale, or sold;

- date, time, and place where the samples were removed;
- identity and address of the individual at whose location the samples were removed;
- sequential number for the procedure provided by the sample remover;
- registration number of the samples provided by the public institutions whose agents have performed the samples removal, and accurate identification of that institution:
- useful remarks which enable the laboratories to know the purpose of the test to be made along with relevant documents attached to the label; and signatures of the sample removers and the owners of the sampled products.

**Adicle 38*: One sample out of the three shall be kept by the holder or the owner of the products. The inspection agent shall provide guidance on the proper manner in which the sample shall be preserved in good condition to ensure that future testing is legitimate.

If the holder or the owner of the products refuses to do so, mention shall be made in the minutes and the inspection agent shall store the sample with the other two samples.

**Adicle 39: The other two samples shall be forwarded with the attached minutes to the public competent institutions whose agents performed the sample removal.

These public institutions shall keep the samples, register them, and provide entry numbers on the label and the minutes. One sample shall be sent to the competent laboratory and the other preserved in proper condition.

If special storage conditions of the samples are required, then the two samples or all three samples as may be the case specified in the second paragraph of Article 38 of this law can be sent to the laboratory for taking the necessary measures.

Article 10: When a product whose conditions or value do not allow the removal of three samples, only one sample shall be removed from the whole product or a portion of it.

The implementation of the above paragraph 1 shall be done for products or goods which for technical and scientific reasons the testing can be done only within a limited time frame failure of which future testing results can be invalid.

A minutes of the taking of the sample shall be made and the product shall be sealed and attached with the label in the same conditions as specified under Articles 35 and 37 of this law. Samples shall be registered and forwarded or submitted to the laboratory according to the procedures stipulated under Article 39 of this law.

Adicle 11: Samples identified for investigation can also be tested in laboratory, or for preliminary findings of the product characteristics by the inspection institutions within the scope of their competence. The removal of the sample shall be made in only one unit.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ve sample can be used only for information purposes, and cannot be used as evidence, or for judicial proceedings as stipulated under Article 51 of this law, or for safety measures stipulated under Articles 52 through 58 of this law, except for temporary consignment as stipulated under Article 53 of this law.

Adicle 42: Government laboratories shall test product samples. Other public or private laboratories recognized by the competent ministries can also conduct product samples testing. The recognition process of these public or private laboratories shall be done by Prakas of competent ministries. The Prakas shall clearly define the scope of competence of these laboratories.

**Article 43 : To conduct product samples testing, laboratories shall use testing methods as prescribed by Prakas of competent ministries.

In the event there are no above-prescribed testing methods, laboratories shall use inter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methods. The testing methods shall be published in a testing bulletin.

Adicle 11: Upon completing their work, laboratories shall prepare a testing bulletin that records the testing results. If the testing results can provide clarifications to the inspection institutions, the laboratories can issue their findings on the product non-compliance against this law or other specific regulations.

Adicle 15: If the laboratories' testing bulletins indicate that the product samples meet the requirements as prescribed by law, and provided that the institutions which made the samples removal have no other indications of fraud, that institution shall notify the product owners about the compliance of their products.

Adicle 46: If the results of the laboratory testing indicate that the product samples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as prescribed by law, procedures stipulated under Articles 47 through 50 of this law shall be applied.

Adicle 17: If the results of the laboratory testing indicate that the product samples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as prescribed by law, or pursuant to further necessary investigations, the inspecting institutions shall inform the offenders of the legal court proceedings against them by providing the justifications for such actions.

The offenders shall have 15 working days to conduct a counter-test and select their own experts.

If the offenders do not exercise their rights as defined above, the testing results stipulated under the above mentioned paragraph 1, shall be uncontested, except for reason of force major.

Adicle 48: The cost for hiring the expert shall be borne by the party requesting the counter-testing. The selection of the expert shall be drawn from a list of experts prepared by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court.

In the event there are no experts qualified in the above-mentioned list or in the event an expert list is non existent, the party can select another expert. This selection shall require the consent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court. Such consent shall be provided within seven working days.

Adicle 19: The product samples preserved by the registering institution shall be provided to the expert as stipulated under Article 48 of this law. The expert shall have one month to give the inspecting institution his conclusions with regards to technical or scientific aspects only.

When his conclusion differs from the one of the first testing as stipulated under Article 47, the expert and the chief of the laboratory which conducted the first test shall meet to discuss the matter within a time frame set by the inspecting institutions. When deemed necessary, the two parties can jointly conduct another test on the third sample. A joint report shall be prepared and sent to the institutions no later than one month from the meeting date.

The expert shall use one or more methods similarly employed by the laboratories and proceed as the first test.

Adicle 50: In the event the party requested a counter-testing for a product which has only one sample as stipulated under Article 40 of this law, the procedures stipulated under Articles 47 and 48 of this law shall be applied. This immediate counter-test shall be done based on documents from the first test.

The expert selected by the party and the chief of the laboratory which conducted

the first test shall meet to discuss their conclusions within a time frame set by the inspecting institutions. A joint report shall be prepared and sent to the institutions no later than two days from the meeting date.

- Adicle 51: In the event of a court action, the inspecting agent shall prepare documents, reports of the testing, expert reports, and other evidenc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law.
- Adicle 52: Inspecting agents specified under Article 27 of this law can temporarily detain, take measures to ensure compliance, redirect, confiscate, and destroy products and goods as well as require compliance of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of this law.

Measures to ensure compliance, redirection, confiscation, and destruction of products can be effectuated by the inspecting agents only after authorization from their head of institutions and consent from the provincial/municipal prosecutor. These provisions shall not be applicable if the measures fall under the scope of Articles 22 to 24 of this law.

- **Adicle 53: Temporary detentions are measures aimed at preventing on a temporary basis any distribution by the holders of the products and goods concerned of the following:
- a) suspected batches of products and goods.
- b) batches of products and goods which, based on actual inspection, do not possess the proper requisite characteristics as defined by law or batches products and goods whose ordinary use can harm the safety or health of consumers.
- c) instruments used for the commission of fraud as specified under Articles 19 and 20 of this law.

Suspected batches of products and goods as stipulated under the above mentioned paragraph a) are those which, after actual inspection and or after the samples testing as stipulated under Articles 34 to 41 of this law, are required to

undergo further test to determine whether these products are in compliance or not in compli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as defined by law or whether their ordinary use can harm the safety or health of consumers.

Provided the results of the additional inspection, which shall be carried out within 15 working days, do not confirm the suspension as raised during the first inspection, the temporary detention shall be immediately withdrawn. When necessary, and pursuant to the request of the head of the inspecting institution, only the provincial/municipal prosecutor shall be authorized to extend the temporary detention period.

On the contrary, if the products do not meet the requisite characteristics as defined by law then one or more safety measures as stipulated under Articles 54 to 57 shall be applied.

In the cases a), b), and c) above, the temporary detention shall not exceed 15 days and shall be accompanied by one or more safety measures as stipulated under Articles 54 to 57 of this law.

When the temporary detention was initiated by the inspecting agents pursuant to paragraphs a), b), and c) above, product holders shall have three working days to appeal the measure to the chief of the inspecting agent. The chief shall have three working days to make his final decision. This appeal does not have the effect of lifting the temporary detention.

In all cases, products which are subject to temporary detention shall be placed under the custody of the product holders.

Addicte 54: Compliance measures are those measures which require the holders or owners of products, goods, and services to end the cause of no compliance.

Those measures include the modification of products, goods, and services, particularly product reclassification, if there is more than one classification, and the re-categorization of these products into another category where the sale of these products are allowed by law.

Adicle 55: Redirection of products and goods shall mean:

the delivery of temporarily detained or confiscated products pursuant to Articles 53 and 56 of this law to enterprises that can directly utilize these products or modify them to meet the legal requirements at the cost of the product owners.

the cost of the product returns to the enterprises which are responsible for packaging, manufacturing, or exporting these products shall be borne by the product owners.

Adicle 56: Products and goods confiscation shall mean the complete removal of the ownership rights from the owners, and can be applied only in the following cases:

for products and goods which are found to be in non-compli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after actual inspection and/or after the samples testing as stipulated under Articles 34 to 40 of this law.

when the product managers or owners do not agree to modify or redirect or when these measures are not applicable.

for instruments used for the commission of fraud as specified under Articles 19 and 20 of this law.

for products and goods whose ordinary use can harm the safety or health of consumers.

Confiscated products are contained and sealed and kept under the custody of the holders, or in the event of refusal, the inspecting agents shall decide on the location of their storage.

**Adicle 57: Inspecting agents can destroy, modify, or cause to be destroyed or modified confiscated products under their supervision when no legitimate and economically beneficial use for the products can be found.

Adicle 58: The measures as stipulated under Articles 53 to 57 of this law pertain only to products or goods that are unreasonably held at a place or places as specified under Article 29 of this law, or when these products are for sale, have been sold, or distributed gratis.

The inspecting agent shall make an official report on the spot. The report shall describe all the points mentioned in Article 33 of this law and an extract of the measures selected and their justifications. A copy of the report shall be provided to the product holders or owners.

Adicle 59: The modalities that pertain to the manufacturing, processing, commercialization, servicing, and inspection of products, goods, and services as below mentioned shall be defined in sub-decrees or other implementation regulations:

1. For products, goods, and services

- definition, name, composition, criteria, and types of quality or hygiene, and quantity of products and goods.
- labeling, presentation, form of products sale and packaging, and quality label as affixed onto the products.
- use of language and description of commercial advertisement in order to avoid confusion, and if necessary, comparative commercial advertisements of all products and services.
- presentation mode, contents of receipts and delivery bills, and technical, commercial, and other advertisement documents.
- conditions regulating products and services not complying with general safety requirements as specified under Article 3 of this law.
- modalities for the issuance of authorizations and the submission of declarations for pre-produc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and modalities for professional selfinspection.

- regulations concerning measurement instruments and their certification.
- precautionary measures, treatments, and inspections and the use of materials in products and services to ensure environmental protection.

2. For food products

processing of food in conformity with the law, criteria of food purity, ingredients used in the food production, food casing and materials used to clean them.

hygienic, sanitary, and nutritional characteristics, microbiological norms under which food is produced; hygienic requirement related to food products transport, production, processing, and commercialization facilities, and employees;

health certificates, health labels or seals.

health status of individuals involved in the food preparation, if deemed necessary.

3. For inspection methods

modalities for implementing the provisions stipulated under Articles 9 to 12 of this law and the procedures for sample removals and testing to identify the products' composition, and their hygienic, sanitary, and microbiological characteristics, products fraud, or to indicate the usage.

When deemed necessary, the modalities for implementing the safety measures stipulated under Articles 52 to 58 of this law.

books, registers, and documents of individuals involved in the manufacturing, processing, or commercializa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which can be made mandatory.

Adicle 60: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inciples governing the guidelines for manufacturing products and goods and providing service shall be set in sub-decrees and regulations of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CHAPTER 6 : OFFENCES

Article 61: Any manufacturer or service provider found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of this law shall be fined by the inspecting agent an amount from R500,000 to R1,500,000.

Adicle 62: Any violator of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8, 19, or 20 of this law shall be subject to imprisonment from 6 (six) days to one month and/or a fine from R1,000,000 to R5,000,000.

Adicle 63: Any violator of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7, 18, or 21 of this law shall be subject to imprisonment from 1 (one) month to 1 (one) year and/or a fine from R5,000,000 to R10,000,000.

In the event any manufacturer or service provider refuses to pay the fines, the inspecting agent shall bring a legal action in the provincial/municipal court.

Adicle 61: In the event of repeated offenses under Articles 16, 17, 18, 19, 20 and 21 of this law, the fines and criminal sanctions shall be doubled without prejudice to other serious crimes resulting from the loss of life, health, and safety of consumers.

Adicle 65: All products, goods, and equipment which are the subject of the offenses committed under Articles 16, 17, 18, 19, 20 or 21 of this law shall be confiscated as state assets. The act of confiscation shall b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ll other losses resulting from the offenses committed under Articles 16, 17, 18, 19, 20 or 21 of this law shall result in civil liabilities for the offenders.

Article 66: The offenses stipulated under Article 63 shall be applied to those who have:

- a. regardless of any circumstances, obstructed inspecting agents, as mentioned under Article 27 of this law, from fulfilling their duties;
- b. refused to present, or concealed accounting, technical, or commercial documents in their possession as stipulated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30 of this law:
- c. refused to present advertised commercial texts or information justifying those advertisements;
- d. given, by any means, deliberately false, misleading or confusing written or verbal information in response to requests by inspecting agents as mentioned under Article 27 of this law;
- e. disposed without approval products which have been temporarily detained or confiscated by inspecting agents;
- f. refused to provide products which have been temporarily detained or confiscated by inspecting agents, to dispose the products and goods as instruct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to modify the products and goods to meet the compliance as required under Articles 53 to 56 of this law.

Adicle 67: Inspecting agents as stipulated under Article 27 of this law shall be administratively accountable. They shall be held liable for negligence which resulted in wrong doings and other consequences in violations of the provisions of this law and other regulations under this law.

Adicle 68: Administrative sanctions under this law which shall be imposed on inspecting agents or competent officials shall include the following:

- a. administrative sanction of the first degree shall comprise of a warning and a reprimand from the head of the institution.
- b. administrative sanction of the second degree shall comprise of a suspension of salary and other benefits for 6 months or more.
- c. Administrative sanction of the highest degree shall comprise of the removal of duties or position or removal from the civil service.

The above enumerated administrative sanctions shall not exclude other criminal sanctions.

Adicle 69: Inspecting agents or competent officials who conspire with offenders or abuse their duties under Article 14 shall have administrative sanctions imposed upon them and shall be f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stipulated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61 of this law.

Inspecting agents or competent officials who conspire with offenders or abuse their position under Articles 7, 8, 19, or 20 shall have administrative sanctions of highest degree imposed upon them and other sanctions shall be imposed under Article 62 without prejudice to other criminal sanctions.

Addicte 70: Inspecting agents or competent officials who conspire with offenders or abuse their duties under Articles 16, 17, 18, or 21 of this law shall have administrative sanctions of highest degree imposed upon them and other sanctions shall be imposed under Article 62 of this law.

Adicle 71: Manufacturing and commercialization facilities as specified in Article 6 which do not comply with the regulations shall have their license's withdrawn by the competent institutions.

2006. 11

Adicle 72: Experts working in laboratories and individuals performing sample products testing as defined under Article 42 to 50 of this law shall be held legally liable for their test bulletins.

Any expert who conspires with offenders or abuses his/her position shall have sanctions i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stipulated under paragraph 2 of Articles 61, 62, and 63 of this law.

CHAPTER 8: FINAL PROVISION

Adicle 73: This law shall be declared as urgent.

캄보디아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 우편번호 150-99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641